

2024 Internal Audit Survey Report

: Korea Future Initiative

2024 내부감사기능 서베이 리포트

July 2024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

ACI Special Report | July 2024

삼정KPMG ACI와 한국감사협회는 국내기업 내부감사기능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및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김민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박수진

연구위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내부감사컨설팅 전문조직

김유경

내부감사컨설팅 전문조직 리더

T. 02-2112-0639

E. youkyoungkim@kr.kpmg.com

한국감사협회

최영규

사무처장

T. 02-3472-1965

E. audit@iiaokorea.or.kr

강태훈

부장

T. 02-3487-1962

E. steven@iiaokorea.or.kr

박지영

주임

T. 02-3487-1964

E. jypark@iiaokorea.or.kr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 | |
|-----------------------------------|----|
| Executive Summary | |
| I. 내부감사기능 강화의 필요성 | 7 |
| 1. 내부감사기능의 본질 | 8 |
| 2.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법제화 필요성 | 9 |
| II.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 10 |
| 1. 감사(위원회) 직속부서로서 내부감사부서 편제 | 12 |
| 2. 적용 규범 유형별 편제 | 13 |
| 3. 내부감사부서와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15 |
| 4.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위상 | 17 |
| 5.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유형 | 18 |
| 6. 감사(위원회)의 승인활동 | 21 |
| 7. 내부감사부서가 직속된 감사위원회의 임면동의권 행사 수준 | 23 |
| 8.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 성과평가 | 24 |
| 9. 내부회계 평가조직의 독립성 | 25 |
| 10. 독립성 개선과제 | 26 |
| III.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 27 |
| 1. 감사 유관 자격증 보유 수준 | 29 |
| 2. IT감사 전문가 보유 수준 | 30 |
| 3. 객관성 보호를 위한 제도 | 33 |
| 4. 전문성 향상 방안 | 37 |
| 5. 교육훈련 우선순위 | 39 |
| IV. 감사방법론의 효율성 | 41 |
| 1. 내부감사 인력규모 | 42 |
| 2. 위험기반감사(RBA) | 44 |
| 3.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방법론의 채택 | 45 |
| 4. 2024년 중점감사영역 우선순위 비교 | 46 |
| 5.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 | 47 |
| 6. 내부감사부서에 특화된 성과평가지표 운영 | 48 |
| V.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성숙도와 만족도 | 51 |
| 1. 성숙도 | 52 |
| 2. 만족도 | 53 |
| 3. 모범사례의 만족도 비교 분석 | 55 |
| VI. 맺음말 | 58 |
| 별첨 | 59 |



Executive Summary

2024 내부감사기능 서베이 리포트

조사대상 기업 수 171개사

이상적인 3차 방어선의 이중적 보고체계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직속 부서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기능적인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행정적인 사안은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는 이중적 보고라인을 갖춘 기업이 IIA의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델을 이상적으로 준수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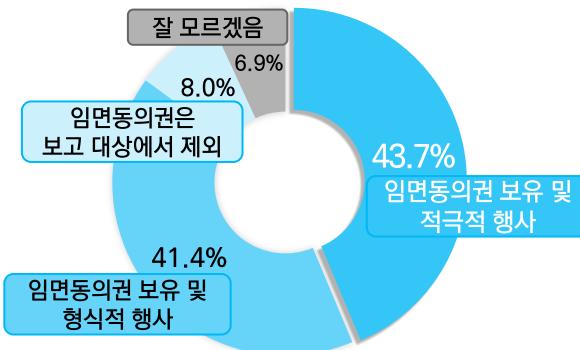
조사 결과, 내부감사부서가 이상적인 3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8.2%**에 그쳤다.



내부감사실무책임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동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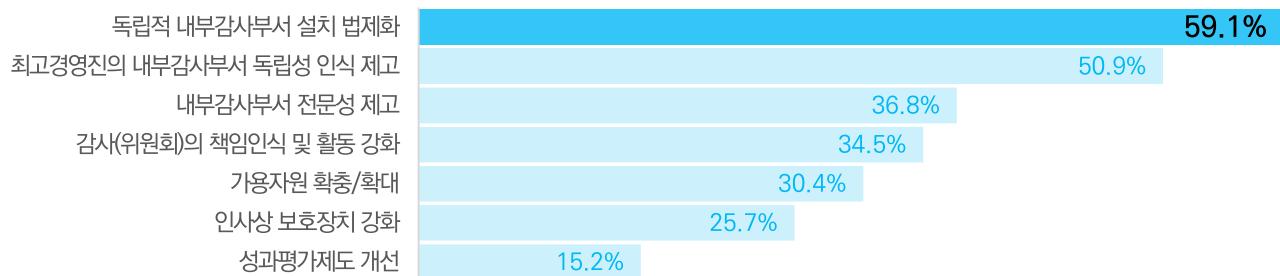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편성한 기업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실무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보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한 기업은 응답기업 중 **43.7%**에 그쳤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실무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개선과제

전체 응답기업의 59.1%가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독립성 확보 관련 법제화를 우선되어야 하는 개선과제라고 응답했고, 최고경영진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에 대한 인식 제고(50.9%),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제고(36.8%)가 뒤를 이었다. * 중복 선택 가능한 문항으로 설문 실시



IT 감사

응답기업 중 65.5%의 내부감사부서가 IT 인프라의 보안수준이나 규제 준수 여부 등의 IT감사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을 평가하는 Data Analytics Audit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78.4%로 높게 나타났다.

[IT감사 수행여부]

34.5%, 실시

65.5%, 미실시

[Data Analytics Audit]

21.6%, 실시

78.4%,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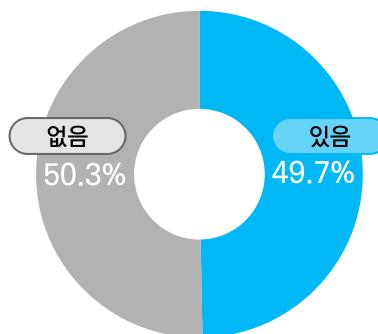
인사상 우대조치

내부감사실무자 및 책임자를 위한 인사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50.3%로 조사되었다.

내부감사실무자 및 책임자를 위한 인사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원은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에서 자체감사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최고관리자의 지원 여부 및 노력도 등을 정성 평가하고 있으며, 인사기점, 전출 시 희망보직제, 감사수당 등을 감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의 예시로 들고 있다.”

[인사상 우대조치의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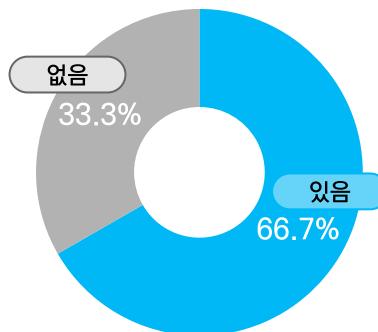
객관성 보호장치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객관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객관성 보호장치가 부재할 경우 중요한 리스크를 축소 또는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체계적인 객관성 보호장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감사기능의 객관성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객관성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객관성 보호장치 예시: 순환근무제도 또는 소속부서 내 담당업무 교대 제도를 운영, 타부서에서 전입한 직원은 과거 12개월 이내에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나 기능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 객관성·공정성·업무윤리에 대한 워크숍 또는 교육훈련활동을 실시 등

[인사상 우대조치 외 객관성 보호장치의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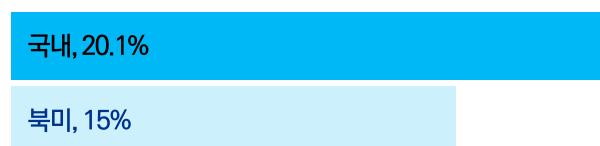
2024년 중점감사영역 우선순위

북미 설문조사 결과(IIA, 2023)와 비교했을 때, ① 사이버보안(10%), ② IT 기술(9%), ③ 외부감사 지원(4%) 등의 항목에서 북미 기업들보다 국내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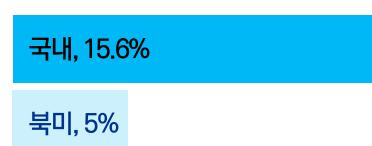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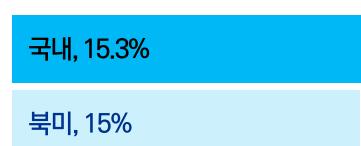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부정적발 및 조사]



[준법(컴플라이언스)]



[재무영역(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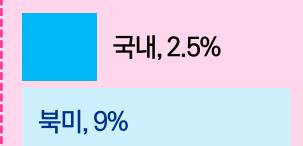
[비용 절감]



[ESG 전략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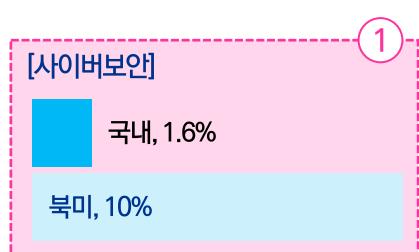
[IT 기술]



[거버넌스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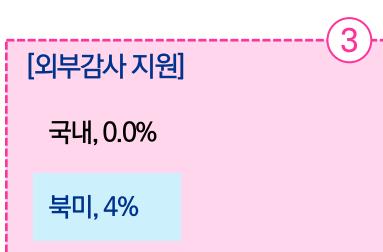
[사이버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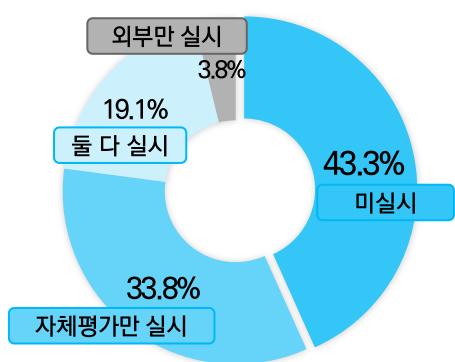
[공급망 등 제3자 관계]



[외부감사 지원]



품질보증개선 프로그램(QAIP)



품질보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56.7%였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66%가 품질보증개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IIA,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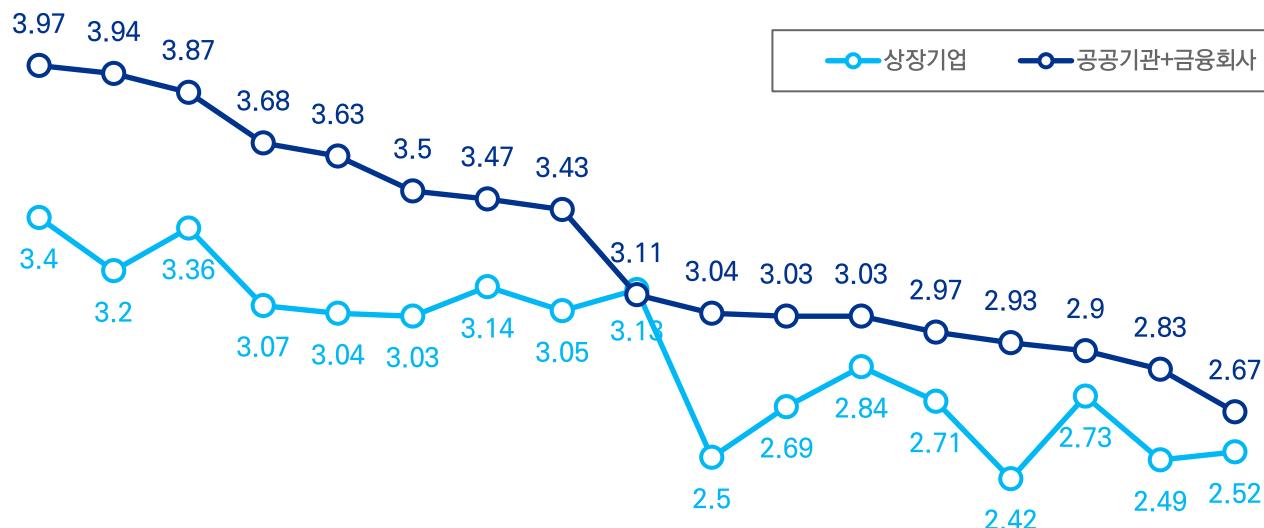
외부품질평가를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22.9%에 그쳤지만, 글로벌 서비스 결과에서는 외부품질평가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두 배 수준(53%)에 달하였다.

※ 품질보증개선 프로그램 (Quality Assurance and Improvement Program):
내부감사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발견하여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규범의 성격에 따른 만족도 결과 비교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하여 경성규범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경우, 대다수의 항목*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경성규범을 적용 받지 않는 상장기업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17개 항목: 인력의 충분성, 인사 상 우대조치 등 소속기업 내부감사기능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감사/평가 수행 중 정무적/정치적 외압에서의 독립성
경영정보의 접근성
감사(위원회)-소속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내부신고제도의 실현성
소속부서의 조직 내 위상 (감사수행과 결과보고의 중요성)
감사/평가의 객관성 보호장치의 실현성
소속부서의 전문성
소속부서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 실현성
IT 솔루션(IT 시스템, CAATs 등 프로그램) 활용성
데이터분석 기반 감사/평가
외부전문인력 활용의 적시성
전문성 유지를 위한 기업 차원의 지원과 노력
인사 상 우대조치
예산의 충분성
내부감사 실무자의 보수(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관리 체계



I.

내부감사기능 강화의 필요성

| | |
|-----------------------|---|
| 1. 내부감사기능의 본질 | 8 |
| 2.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법제화 필요성 | 9 |

I. 내부감사기능 강화의 필요성

1. 내부감사기능의 본질

내부감사기능의 핵심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있다. 내부감사부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내부감사기준과 국제윤리강령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IIA,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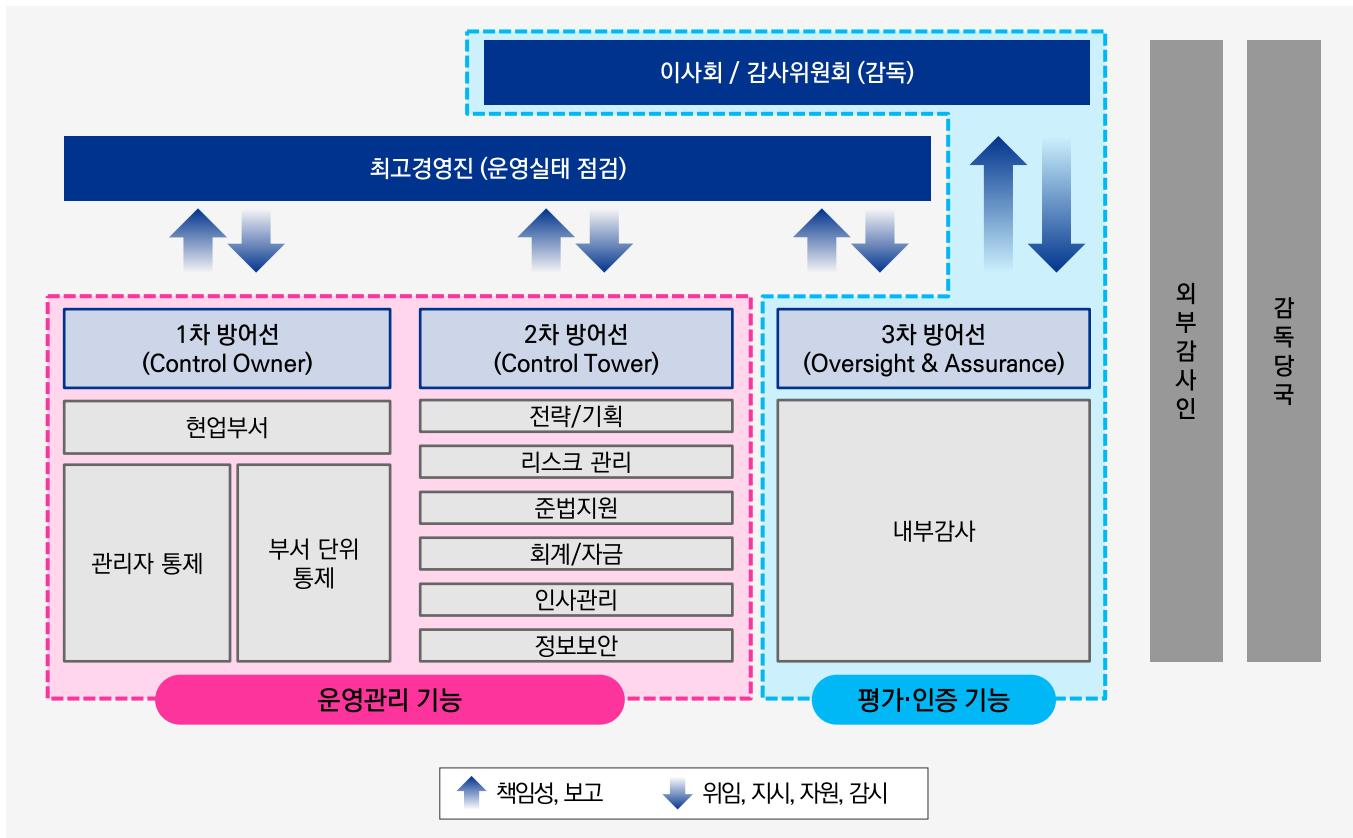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보호 및 유지는 내부감사기능의 수행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내부감사부서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1.3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IIA의 3차 방어선 모델에서도 내부감사부서는 1차 및 2차 방어선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직속부서로 편성되어 기능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중적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차 방어선 모델(Three Lines of Defense Model)]



Source: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핸드북 4th Edition, 2023.6
IIA, IPPF-Practice Guid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2011.8

2.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법제화 필요성

그러나, 기업 실무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가 앞서 살펴본 전제 조건들을 얼마나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준수율이 47.5%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의 비중이 36.3% 수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3차 방어선 모델을 이상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8.2% 뿐이었다. 선행연구에서 기업들의 핵심지표 ⑫ 번 공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김우진 외, 2023)에서도,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비중은 2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中 내부감사기구 지표 준수 현황]

| 구분 | 핵심지표 | 23년 준수율 | | |
|----------------|--|---------|-------|-------|
| | | 전체 | 2조 이상 | 1~2조 |
| 내부감사기구 (5개)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 92.1% | 98.0% | 81.6% |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 47.5% | 49.5% | 43.9% |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 92.5% | 97.1% | 84.2% |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64.5% | 78.4% | 39.5% |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98.1% | 99.5% | 95.6% |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거나 최소한 내부 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Source: 한국거래소, '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3.12.7'

앞서 언급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연성규범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제하는 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뿐이며, 두 법률은 적용대상이 각각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감사위원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된 미국의 경우, NYSE 상장규정을 통해 상장 후 1년 이내에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제화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Source: 한국법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3호: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2023.12

[NYSE 상장규정]

- ✓ 미국 상장 기업들은 신규 상장 후 1년 이내에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303A.07.(c)).
 • 내부감사부서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도와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를 감독하여야 한다(303A.07.(b).(i).(A).(4)).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303A.07.(b).(iii).(H)).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감사방법론 또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었다는 전제하에 활용가능한 것인만큼, 동 보고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방법론의 효율성에 관한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또한, 내부감사 독립성, 객관성, 감사방법론에 관해 이해관계자(내부감사실무자, 내부감사실무책임자, 감사위원, 감사)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내부감사실무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II.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 | |
|-----------------------------------|----|
| 1. 감사(위원회) 직속부서로서 내부감사부서 편제 | 12 |
| 2. 적용 규범 유형별 편제 | 13 |
| 3. 내부감사부서와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15 |
| 4.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위상 | 17 |
| 5.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유형 | 18 |
| 6. 감사(위원회)의 승인활동 | 21 |
| 7. 내부감사부서가 직속된 감사위원회의 임면동의권 행사 수준 | 23 |
| 8.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 성과평가 | 24 |
| 9. 내부회계 평가조직의 독립성 | 25 |
| 10. 독립성 개선과제 | 26 |

Preview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이란?

- ✓ (독립성)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은 편향되지 않게 내부감사기능을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상태
 -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본질적 가치
 - 최고경영진과 최고경영진에 직속된 내부통제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해주는 전제 요소
- ✓ (편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직속부서로 편성되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 ✓ (보고체계) 내부감사기능에 관한 보고는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실시하고, 인사·예산 등 행정적인 사안에 관한 보고는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실시하는 이중적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내부감사기능을 수행
- ✓ (위상)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내부감사실무책임자가 감사(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위상(또는 직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 (3차 방어선 모델)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직속으로 편성되어 독립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실시
 - 내부감사부서는 내부통제 3선에 해당하며, 모든 경영진 직속 부서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통제 1, 2선 업무를 병행할 경우,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요건 손상 우려
 - (겸직불가) 내부통제 1, 2선(프로세스 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준법감시 등)은 경영진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대상이 됨
 - (겸직가능)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평가·감독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내부신고제도 운영 등의 업무는 내부감사부서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Source: IIA, IPPF(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2017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2024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핸드북 4th Edition, 2023.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상장회사 감사위원회(감사) 직무해설, 2019.5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201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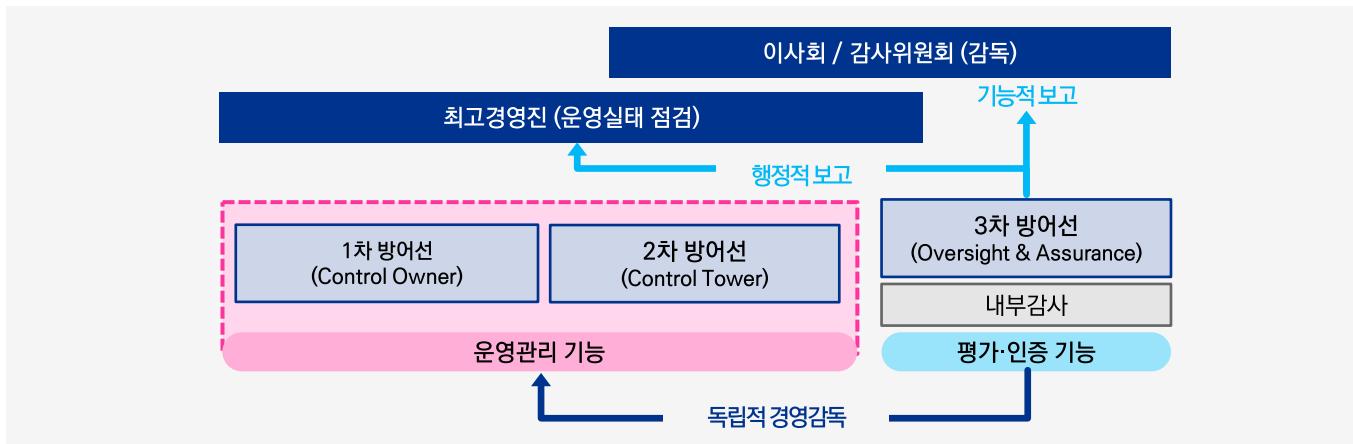
II.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직속부서로서 내부감사부서 편제

설문결과에서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의 직속부서로 편성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50.9%에 그쳤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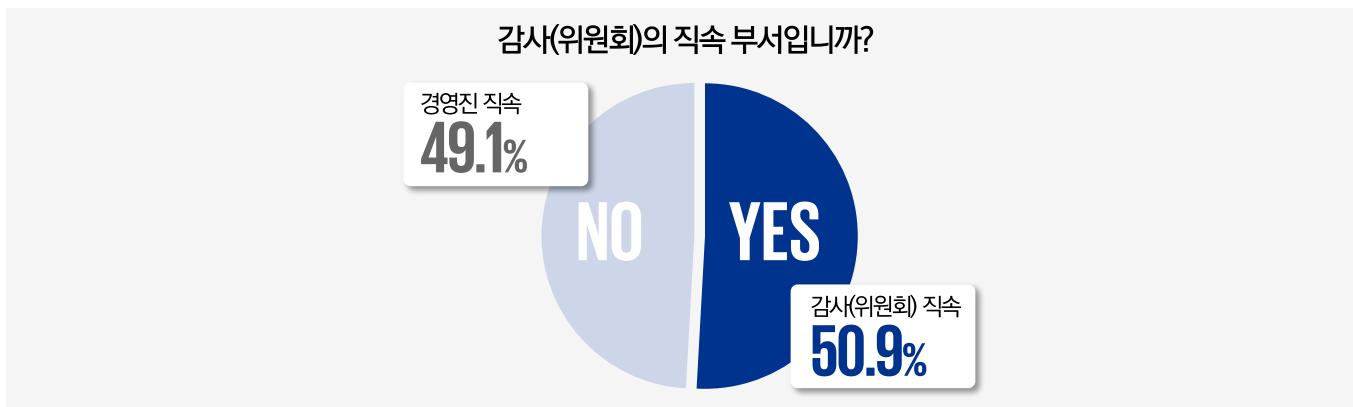
내부감사부서는 '내부통제 제3차 방어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직속이 아닌, 감사(위원회)의 직속 부서로 편제되어야 한다.

[독립적 경영감독]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내부감사부서의 직속 여부]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내부감사부서

- ✓ 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1) 동 문항에서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일부가 실무적으로는 경영진 소속이라는 답변을 한 경우가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직속된 기업의 수는 50.9% 보다 낮을 수 있다.

2. 적용 규범 유형별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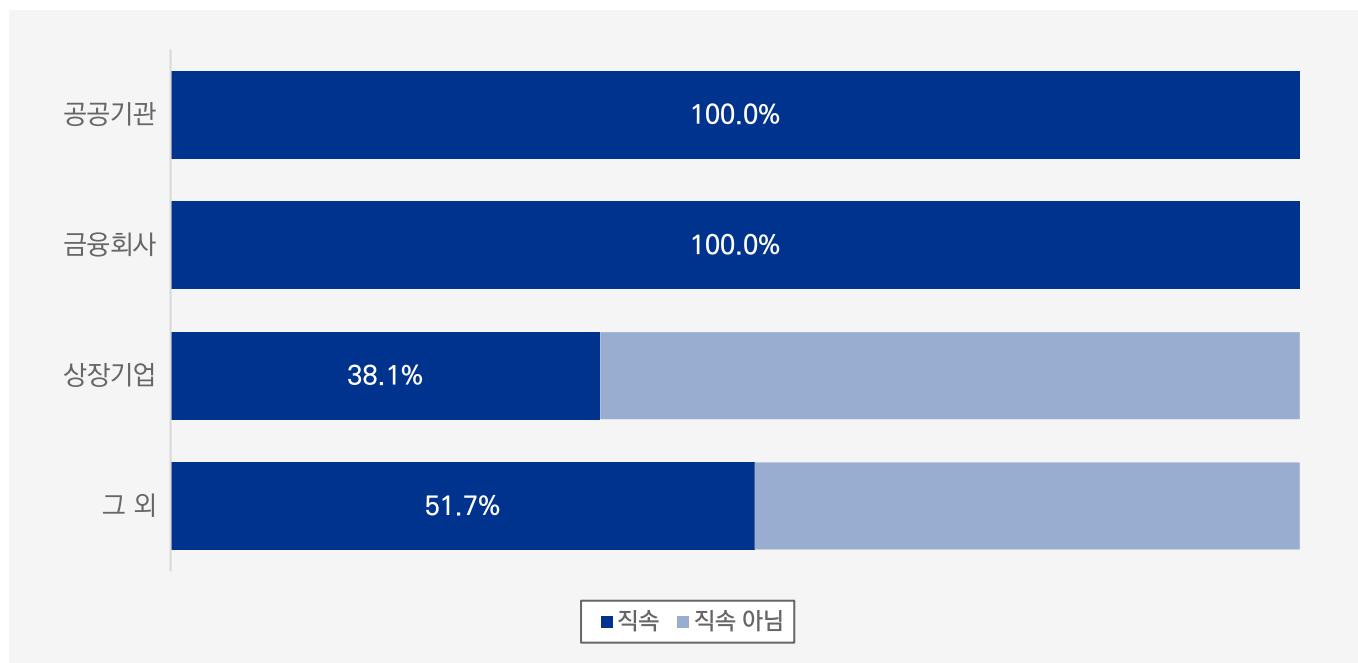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관한 경성규범(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모두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직속부서로 편성했지만,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관한 강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장기업 및 그 외 비상장 기업에서는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의 직속부서로 편성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표 제목]

| 기업유형 |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법령 | 강제성 |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O |
| 금융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O |
| 일반 기업 | (ESG 모범 규준) | X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기업유형별 감사(위원회) 직속부서 여부]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참고] 감사(위원회) 직속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내부감사부서의 목적이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상시적·조직적으로 보좌하며 평가 및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진 등 상위기구가 아닌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를 감독 및 관리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직속 내부감사부서 설치 시 기대 효과]

| | |
|------|--|
| 기대효과 | 내부감사부서 활용한 기업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체계 평가 |
| | 감사위원회의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의 효율성에 대한 감독 수행 |
|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활동 범위 평가와 승인을 통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상호보완 |
| | 권한 활용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증대 |
| |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감사 활동 보장 |
| | 내부통제의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 |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167개사이나 감사위원회 직속인 경우는 21개사(12.6%)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기업의 보고라인 및 임면동의권 현황]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감독 방안]



Source: 삼정KPMG ACI, 2023 Audit Committee Outlook, 2023.8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핸드북 4th Edition, 2023.6

3. 내부감사부서와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1) 기능적 보고라인

감사(위원회)의 직속부서라고 하더라도, 이중적 보고라인이 확립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직속인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적 보고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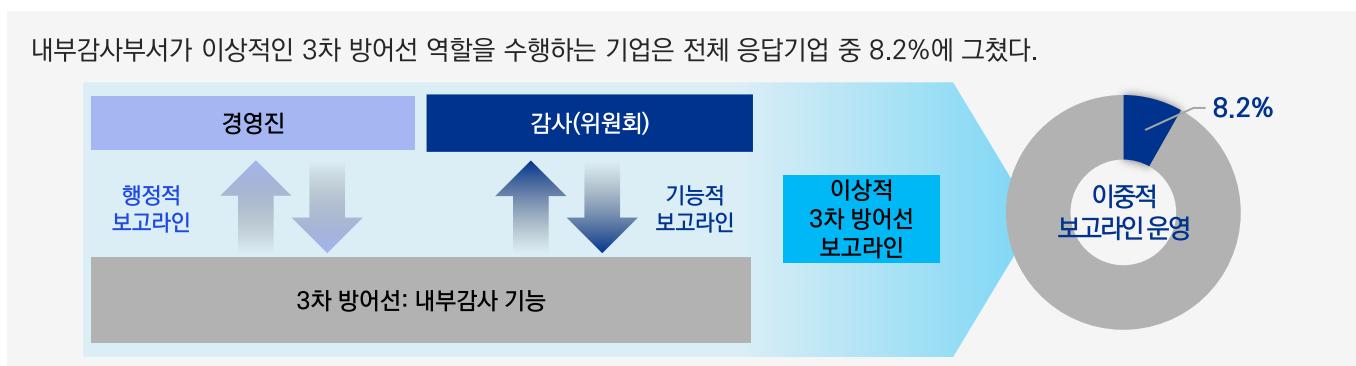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2) 이상적인 이중적 보고라인(Dual Reporting Relationship)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직속 부서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기능적인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행정적인 사안은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는 이중적 보고라인을 갖춘 기업이 IIA의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델을 이상적으로 준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3차 방어선의 이중적 보고체계]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 ✓ 이중적 보고라인(Dual Reporting Relationship): 내부감사부서가 행정적 사안은 경영진에 보고하고, 기능적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이상적인 보고 체계를 의미
 - 기능적 보고(Functional Reporting): 내부감사기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예를 들어, 연간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 감사후속조치, 징계 및 보상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음
 - 행정적 보고(Administrative Reporting): 예산 집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요청, 내부감사부서 인사 명령에 관한 행정처리 등 내부감사기능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6.2, 7.1]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기능적인 사안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행정적인 사안을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를 권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내부감사부서의 이중적 보고라인과 조직 내 위상(positioning)에 대한 내용을 내부감사현장에 명시해야 한다.
- ✓ 내부감사현장에 다음의 행정적 사안의 보고 책무(절차 포함)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다.
 - 내부감사부서의 인적자원 관리 및 예산
 -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직무 수행 관련 비용



4.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위상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감사(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이중적 보고가 가능한 위치여야 한다.

(C-Level 수준 임원을 권장)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직위]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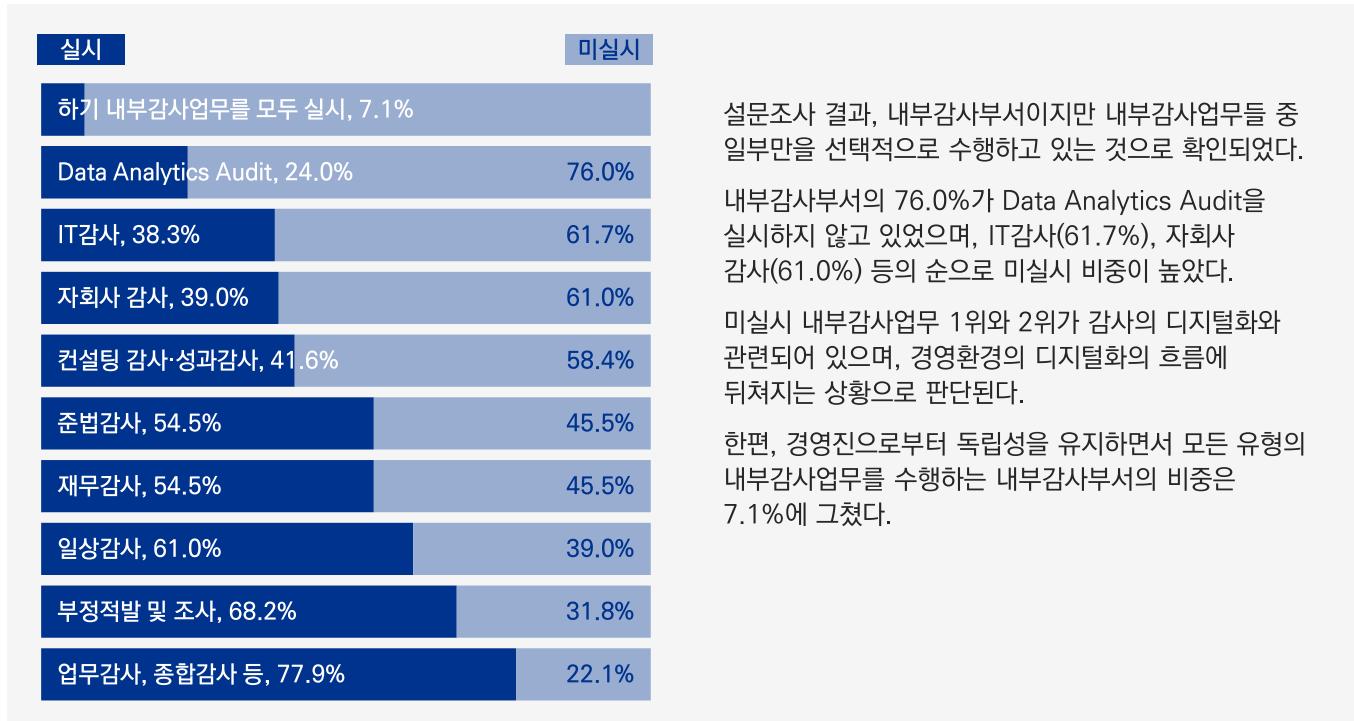
내부감사부서

- ✓ 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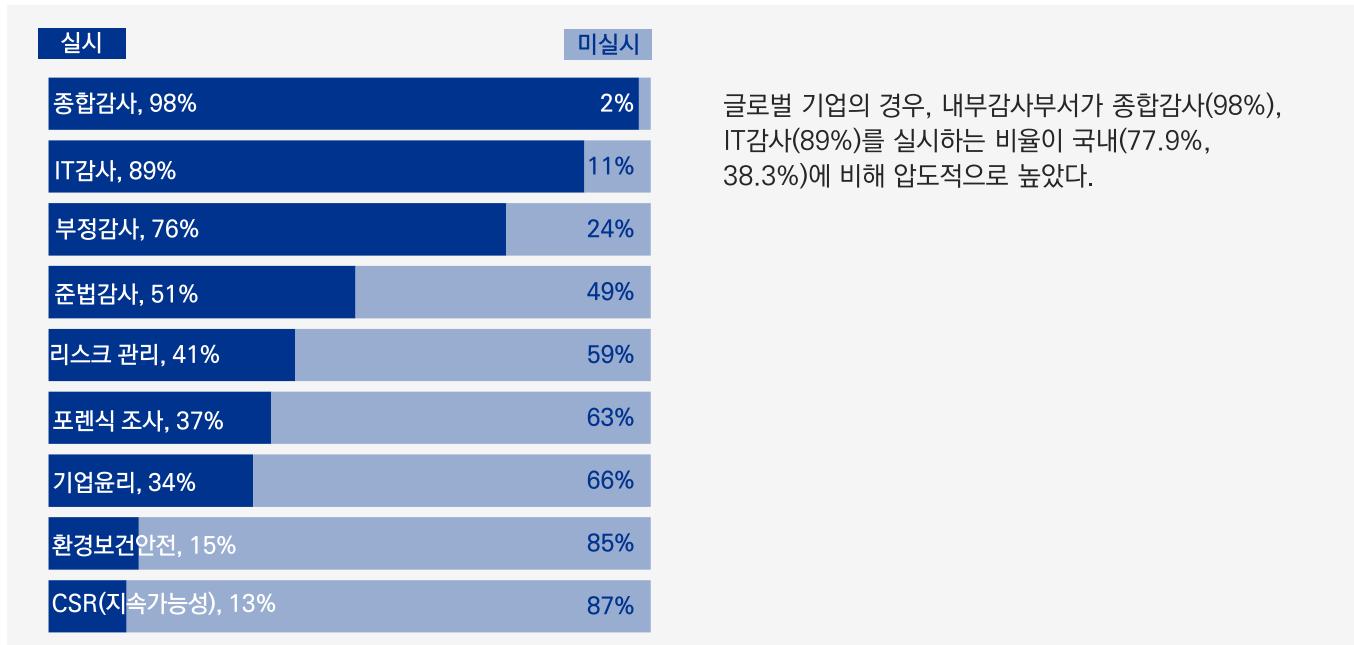
5.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유형

(1) 내부감사부서의 고유 업무

[국내 내부감사 업무유형별 수행 비중]



[해외 내부감사 업무유형별 수행 비중]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2021 AIS Benchmarking Report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내부신고 제도의 독립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내부신고 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내부신고 업무를 같이 수행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기능과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를 경영진 직속 부서가 실시할 경우, 감사대상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독립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수행]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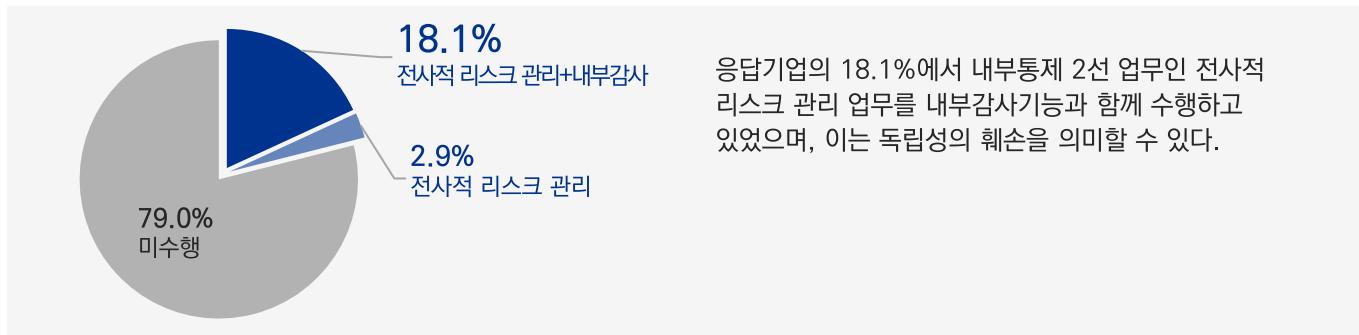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 ✓ (I. 내부감사기구 – 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때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음
 -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내부통제부서나 내부감사부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보다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지 않거나 충실히 운영되지 않으면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으며,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7개 회사가 해당 사유로 의견이 변형된 사례가 있음
- ✓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3.1 내부신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함.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내부감사부서에 의한 현업(1, 2선) 업무의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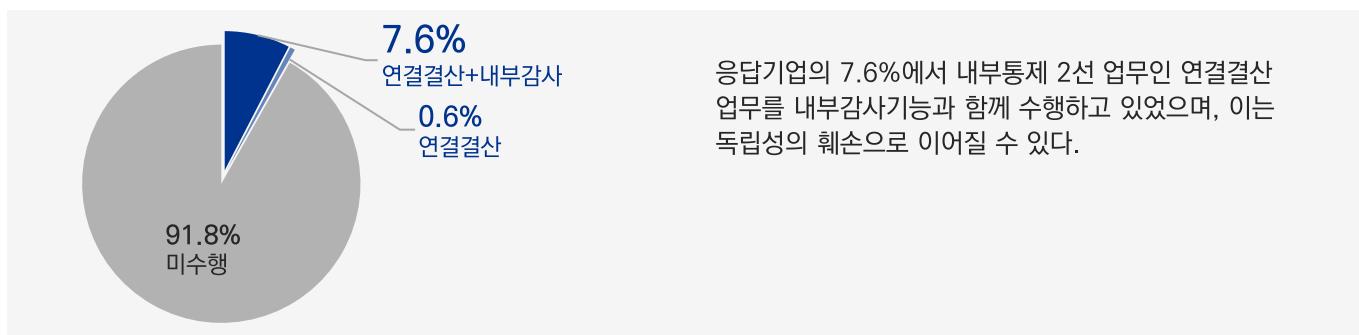
내부통제 3선에 해당되는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는 경영진 산하의 내부통제 1, 2선 업무로부터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한 독립성 보호장치가 없이 분리되지 못할 경우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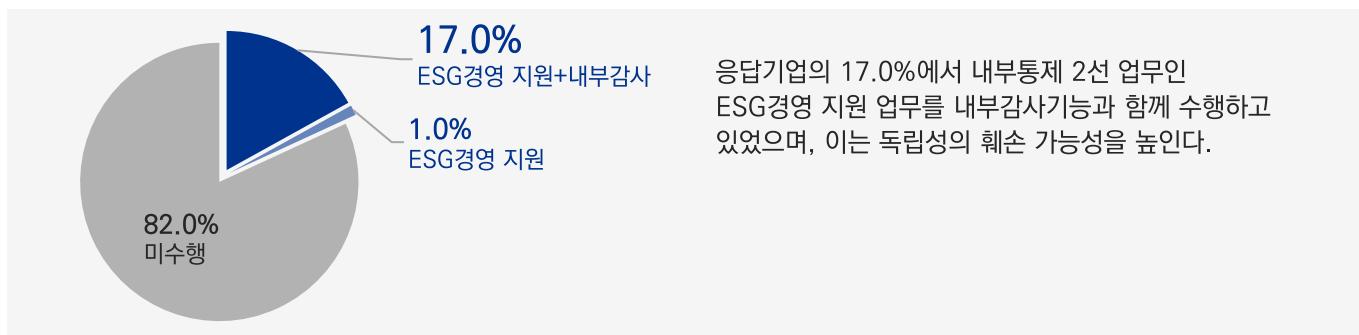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연결결산 수행]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ESG 경영 지원]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6. 감사(위원회)의 승인활동

(1) 감사(위원회)의 법적 권한 행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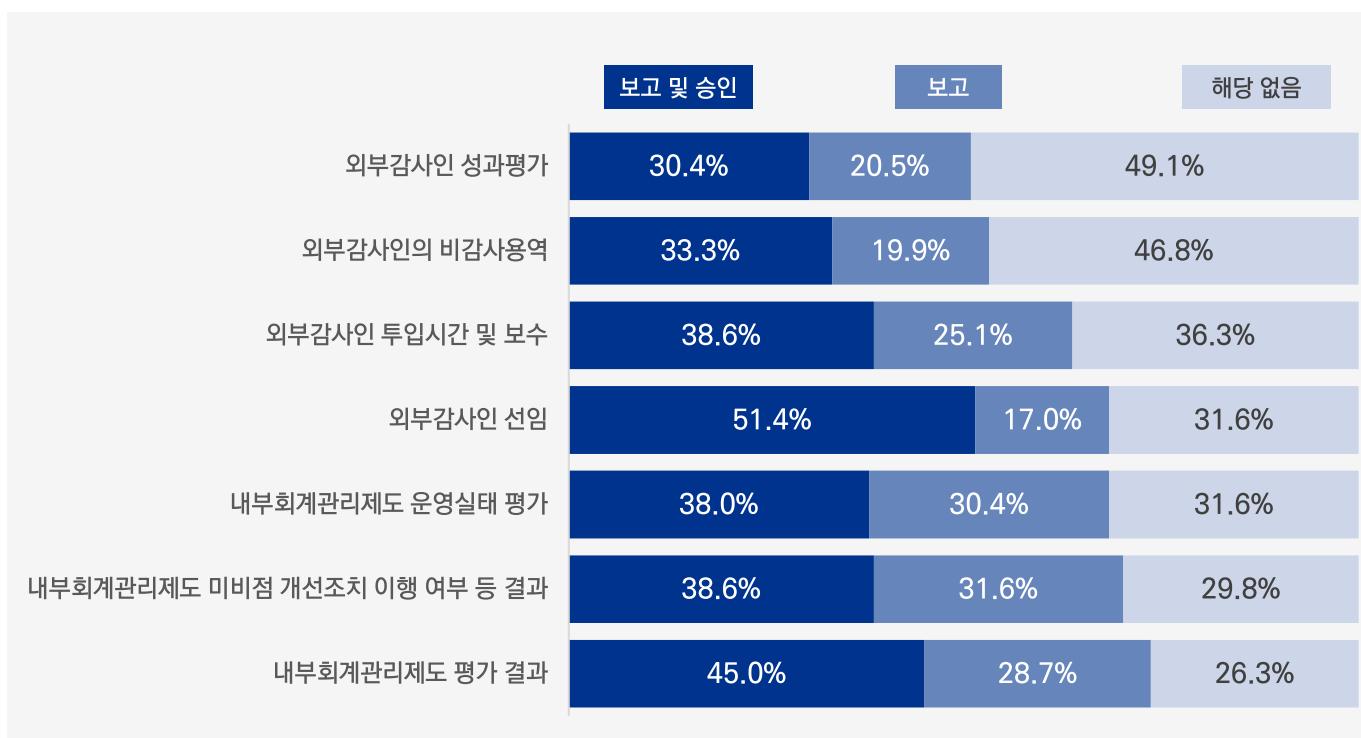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능 관련 안건을 적극적이고 충실히 감독하고 이를 승인할 책무가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한 기능적 사안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보고만 받는 실무 관행은 위법 소지까지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으로 정해진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무 관련하여, 동 설문조사는 하기 7가지 항목의 보고 및 승인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형식적인 보고만 실시하거나 보고조차 실시하지 않는 실무(해당없음) 관행은 위법 소지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최저 26.3%에서 최고 49.1%까지 높게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승인활동 관련 법령]

| 법령 | 법적 권한 및 책무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 선임 (적극적 권한 행사 51.4%) • 외부감사인 투입시간 및 보수 (적극적 권한 행사 38.6%)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적극적 권한 행사 38.0%) |
|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적극적 권한 행사 33.3%) |

[감사(위원회)의 승인활동 – 법적 권한 및 책무 항목]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2) 내부감사부서가 직속된 감사(위원회)의 역할 충실했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직속부서로 편제된 기업의 경우, 내부감사부서가 기능적 사안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의 승인활동 – 법적 권한 및 책무 항목]

감사(위원회)에 보고도 실시하지 않는(해당없음)는 응답이 가장 많은 기능적 사안은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보상(40.2%)이었으며, 외부감사인 성과평가(35.6%), 내부감사 품질평가(34.5%),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33.3%) 등의 순이었다.

| | 보고 및 승인 | 보고 | 해당 없음 |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보상 | 40.2% | 19.6% | 40.2% |
| 외부감사인 성과평가 | 43.7% | 20.7% | 35.6% |
| 내부감사 (내·외부) 품질평가 | 41.4% | 24.1% | 34.5%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 47.1% | 19.6% | 33.3%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48.3% | 24.1% | 27.6% |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 결과 | 48.3% | 26.4% | 25.3% |
| 내부신고제도 운영 결과 | 40.2% | 36.8% | 23.0%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 56.3% | 20.7% | 23.0% |
| 내부감사부서의 성과평가 | 60.9% | 17.2% | 21.9% |
| 외부감사인 투입시간 및 보수 | 48.3% | 29.9% | 21.8% |
| 내부감사기능 수행의 제약이나 지위, 독립성 보호장치 등 | 60.9% | 18.4% | 20.7% |
| 외부감사인 선임 | 66.7% | 16.1% | 17.2%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임명과 해임 | 59.8% | 24.1% | 16.1% |
| 내부감사 예산 및 자원(인력, 시설 등) 투입 계획 | 63.2% | 20.7% | 16.1% |
| 내부감사 후속조치 (징계, 보상 등 인사조치) | 47.1% | 36.8% | 16.1% |
| 내부감사 후속조치 (지적사항 이행 감사 결과) | 52.9% | 37.9% | 9.2% |
| 내부감사규정의 제·개정 | 83.9% | 10.4% | 5.7% |
| 내부감사 결과 | 69.0% | 25.3% | 5.7% |
| 연간 감사계획 | 79.3% | 16.1% | 4.6%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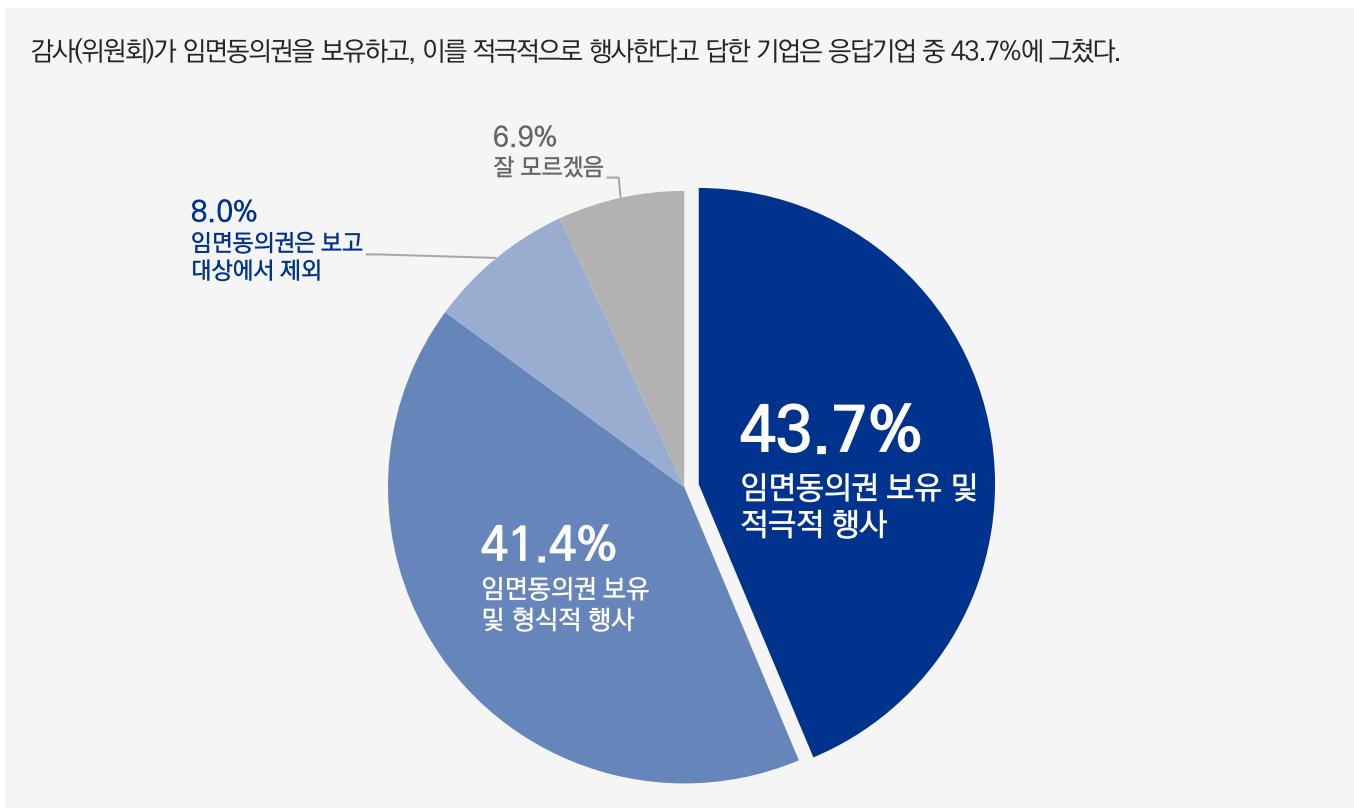
7. 내부감사부서가 직속된 감사위원회의 임면동의권 행사 수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실무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내부감사기능 독립성의 중요한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실무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보유·행사하고, 최고경영진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 Standard 7.1)
-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거나 최소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中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실무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모범규준 中 지배구조 모범규준 1.4)

[내부감사부서를 직속으로 편성한 기업의 임면동의권 행사]

감사(위원회)가 임면동의권을 보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답한 기업은 응답기업 중 43.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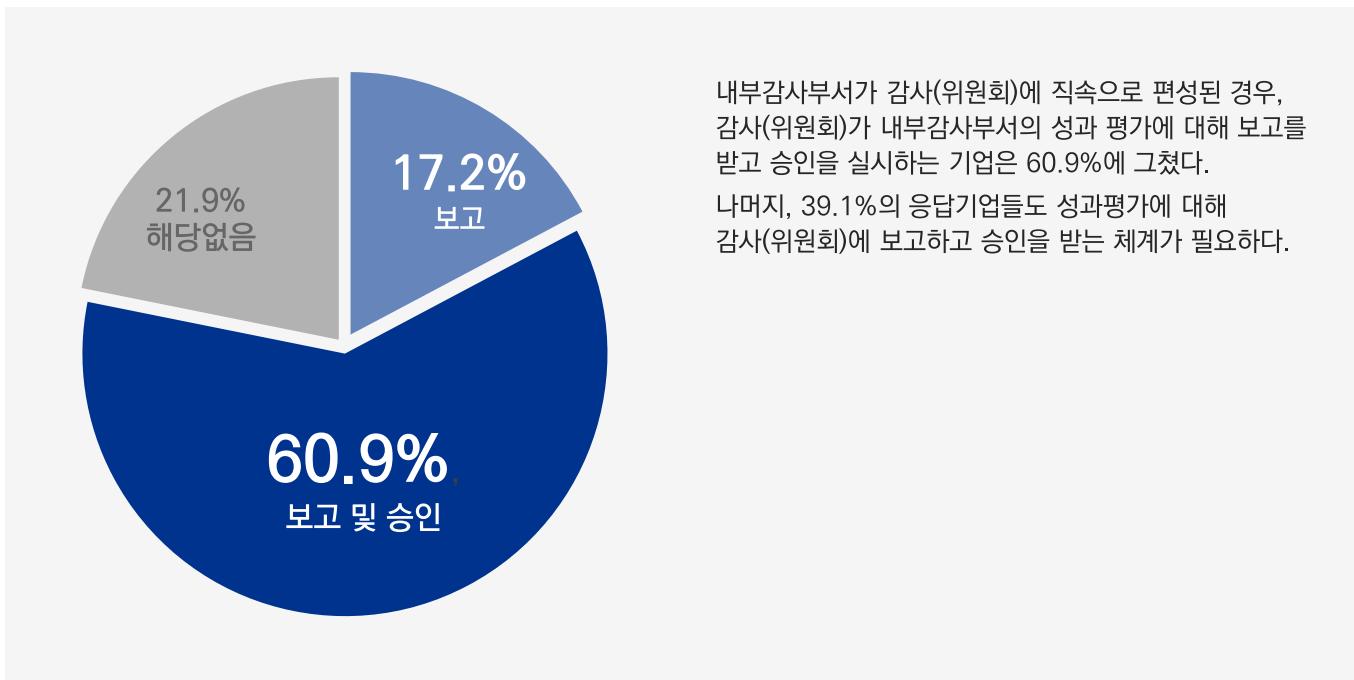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8.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 성과평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성과평가를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의 직속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의 직속 부서로 편성해야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목표점을 제시하고, 내부감사 성과를 점검하며,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등의 PDCA 활동을 통해 내부감사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며, 외압으로부터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내부감사부서를 직속으로 편성한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 보고 및 승인 활동]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12.1]

- ✓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내부감사부서의 성과목표를 승인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글로벌내부감사기준의 준수 내역과 성과목표 대비 추진경과에 대해서 내부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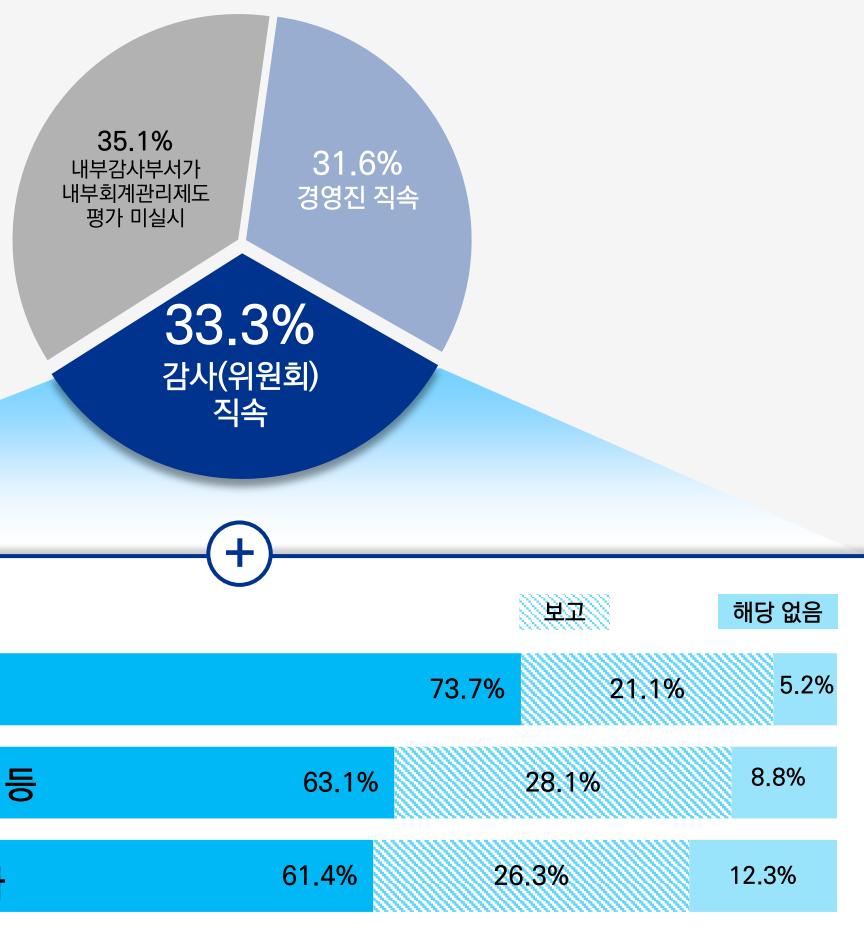
9. 내부회계 평가조직의 독립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조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평가조직과 운영조직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책임은 최고경영자에게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책임은 감사(위원회)에 있는데, 이는 평가·감독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속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실무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된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감사(위원회)에 직속된 내부회계 평가조직]

전체 응답기업 중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실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4.9%였고, 감사(위원회)에 직속되어 독립성이 확인된 경우는 33.3%에 그쳤다. 31.6%는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자인 경영진의 직속으로 편제되어 평가의 독립성 위배 가능성이 높았다.

상기 독립성이 확인된 33.3%를 100%로 보았을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기업은 그 중 61.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 및 승인 받는 기업은 73.7%, 미비점 개선조치 등 이행 결과를 보고 및 승인 받는 기업은 63.1%로 나타났다. 보고만 받거나 보고조차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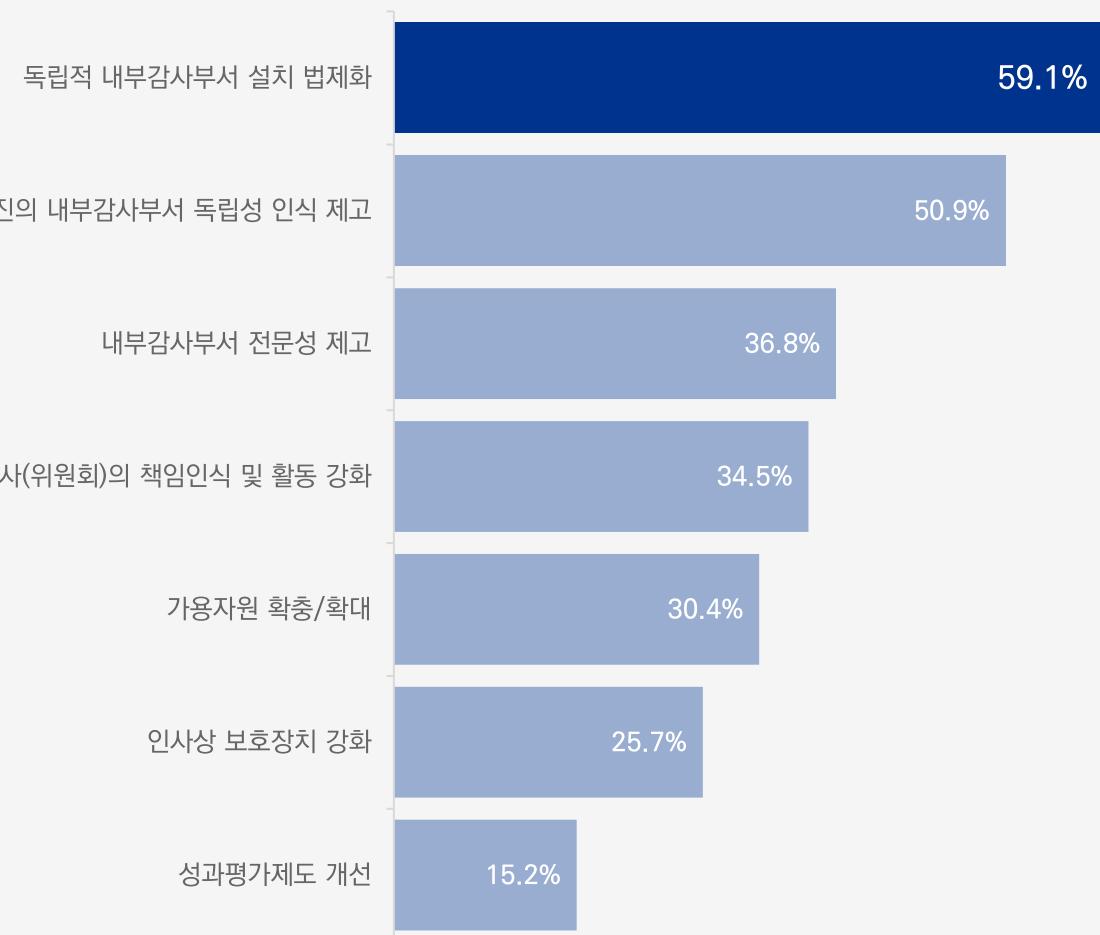
10. 독립성 개선과제

내부감사부서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 편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면서, 실질적인 내부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 부재하고,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또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지 못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업은 신규 상장 후 1년 이내에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해야 하며(NYSE 상장규정 303A.07.(c)),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의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그 필요성을 매년 검토하여 이사회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5조)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개선과제]

전체 응답기업의 59.1%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독립성 확보 관련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개선과제라고 응답했고, 최고경영진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에 대한 인식 제고(50.9%),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제고(36.8%) 등의 순이었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I.

내부감사부서의 객관성

| | |
|--------------------|----|
| 1. 감사 유관 자격증 보유 수준 | 29 |
| 2. IT감사 전문가 보유 수준 | 30 |
| 3. 객관성 보호를 위한 제도 | 33 |
| 4. 전문성 향상 방안 | 37 |
| 5. 교육훈련 우선순위 | 39 |

Preview

내부감사부서의 객관성이란?

- ✓ (객관성)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해상충을 피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타인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함
- ✓ (객관성 보호) 내부감사인은 과거 12개월 이내에 담당하던 특정 업무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됨. 만약 내부감사부서가 앞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서 검증 서비스(assurance service)를 제공해야 한다면,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자문 서비스가 객관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감사실무자 개인의 객관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함
 - 객관성 보호장치 예시: 순환근무제도 또는 소속부서 내 담당업무 교대 제도를 운영, 타부서에서 전입한 직원은 과거 12개월 이내에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나 기능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 객관성·공정성·업무윤리에 대한 워크숍 또는 교육훈련활동을 실시 등
- ✓ (객관성 보호를 위한 인사 상 우대조치) 내부감사실무자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대조치(신분보장, 인사평가 시 우대, 감사수당 지급 등)를 마련할 수 있음
 - 인사 상 우대조치 예시: 신분보장, 감사수당 지급, 별도의 내부감사부서 성과평가체계 운영(가점 부여, 현업부서에 의한 다면평가 제외 등 포함), 우수감사인 포상, 교육기회 제공 우대 등
- ✓ (전문성)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Source: IIA, IPPF(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2017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2024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핸드북 4th Edition, 2023.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상장회사 감사위원회(감사) 직무해설, 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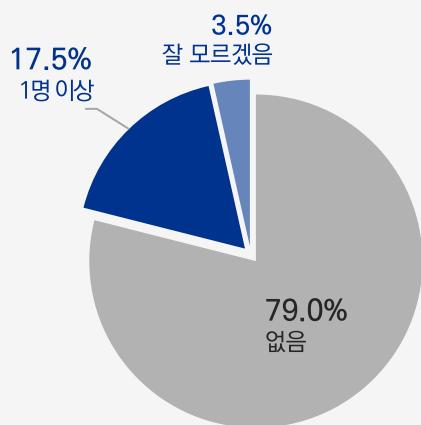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2018.05.15

III. 내부감사부서의 객관성

1. 감사 유관 자격증 보유 수준

내부감사실무자 및 책임자는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태도를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및 확신 제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내부감사인력 중 CPA 보유자 비중]



공인회계사(CPA)의 회계 전문성은 내부감사부서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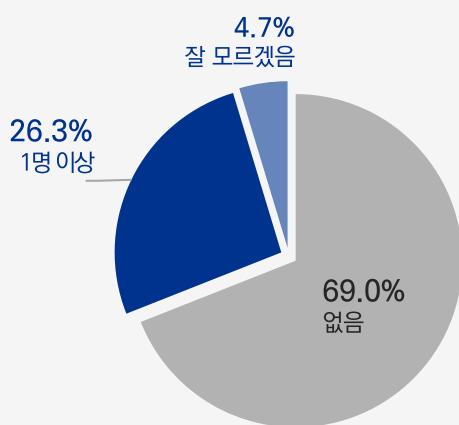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을 1인 이상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내부감사실무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1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17.5%에 그쳤다.

내부감사부서 내 공인회계사를 1명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79%에 달했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내부감사인력 중 CIA 보유자 비중]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는 내부감사에 특화된 전문자격증으로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국제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통제,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제공인내부감사 자격을 소지한 내부감사실무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국제공인내부감사사를 1명 이상 보유한 기업은 26.3%로 나타났다.

내부감사부서 내 국제공인내부감사사를 1명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69.0%로 확인되었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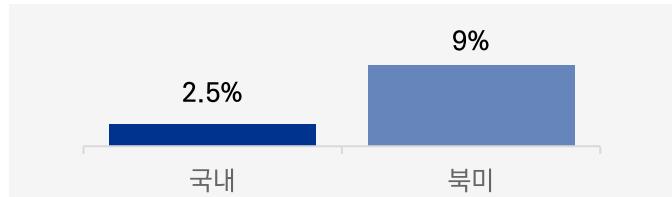
-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IT감사 전문가 보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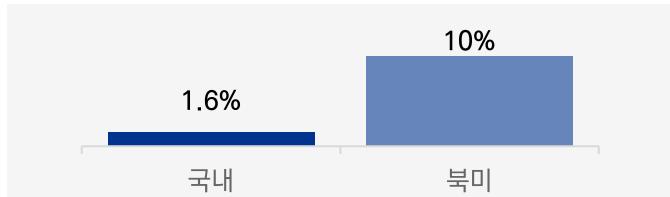
IT 관련 중점감사영역 선정 비중이 북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IV-4 참조), 이는 내부감사부서 내 IT 전문가 보유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경영활동을 감독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는 IT 기반 감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점감사영역으로 IT기술을 선정한 비중]



[중점감사영역으로 사이버보안을 선정한 비중]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T 감사 수행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수준]



IT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의 비중이 65.5%로 높게 나타나, 많은 수의 내부감사부서가 IT 인프라의 보안수준이나 규제 준수 여부 등의 평가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을 평가하는 Data Analytics Audit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업의 응답 또한 78.4%로 높게 나타났다.

내부감사부서가 IT감사나 Data Analytics Audit을 실시하는 비중이 낮았던 만큼, IT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시스템 전문가 등의 보유 비중 또한 낮게 나타났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T기반 감사 툴 활용 수준]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 |
|-----------|------------|
| 35.7%, 보유 | 64.3%, 미보유 |
|-----------|------------|

E-Audit 시스템

| | |
|-----------|------------|
| 17.5%, 보유 | 82.5%, 미보유 |
|-----------|------------|

CAATs Tool

| | |
|-----------|------------|
| 35.7%, 보유 | 64.3%, 미보유 |
|-----------|------------|

AI

| | |
|----------|------------|
| 1.2%, 보유 | 98.8%, 미보유 |
|----------|------------|

IT 감사 및 데이터 분석 감사 실시 비중과 IT 관련 전문인력 보유 수준도 낮았던 만큼, IT기반 감사 툴 활용수준 또한 낮게 나타났다.

- ✓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이상징후를 포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 ✓ E-Audit 시스템은 감사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준다.
- ✓ CAATs Tool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감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 ✓ AI감사는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학습하여 미래의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외부전문인력 활용]

IT감사 외부전문인력 활용

| | |
|-----------|--|
| 국내, 16.4% | |
|-----------|--|

| | |
|-----------|--|
| 북미, 48.0% | |
|-----------|--|

내부감사부서가 모든 분야의 전문인력을 내재화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선 설문결과에서 IT 감사의 실시 비중이 낮았던 만큼 현재 시점에서 국내의 IT 감사 관련 전문인력 활용수준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North American Pulse, 2023

[참고: 외부전문인력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전문인력 활용

국내, 45.0%

북미, 27.0%

부정직발 외부전문인력 활용

국내, 8.8%

북미, 6.0%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음

국내, 21.6%

북미, 38.0%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North American Pulse, 2023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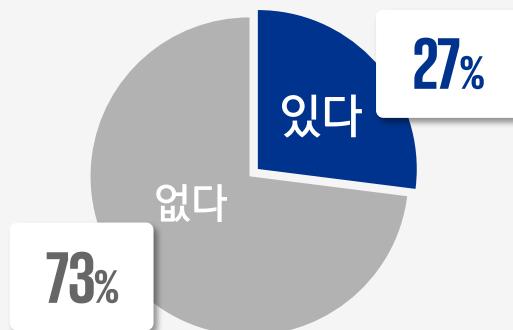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내부감사 시 사용하는 기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기술의 제약이 내부감사기능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객관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감사 관련 직무의 종사자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CCAB, 2021)에 따르면 27%의 내부감사인이 직업윤리에 반하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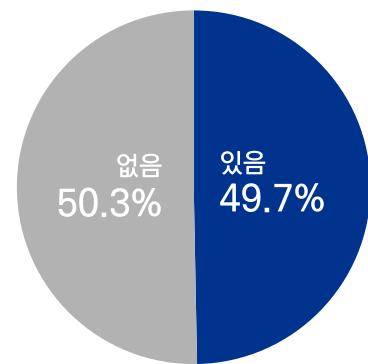
객관성 보호장치는 내부감사실무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자유롭게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내부감사결과의 품질 제고로도 이어진다.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는가?



Source: CCBA, Ethics Survey (2021)



[인사상 우대조치]**인사상 우대조치의 존재 여부**

인사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50.3%로 조사되었다.

내부감사실무자 및 책임자를 위한 인사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감사원은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에서 자체감사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최고관리자의 지원 여부 및 노력도 등을 정성 평가하고 있으며, 인사가점, 전출 시 희망보직제, 감사수당 등을 감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의 예시로 들고 있다.

부서 이동 시, 희망부서 발령

| | |
|-----------|------------|
| 16.4%, 실시 | 83.6%, 미실시 |
|-----------|------------|

응답률이 20%가 넘는 인사 우대조치 항목이 없어 인사상 우대조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수감사인 포상

| | |
|-----------|------------|
| 13.5%, 실시 | 86.5%, 미실시 |
|-----------|------------|

감사수당 지급

| | |
|----------|------------|
| 9.9%, 실시 | 90.1%, 미실시 |
|----------|------------|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 제공·우대

| | |
|----------|------------|
| 8.8%, 실시 | 91.2%, 미실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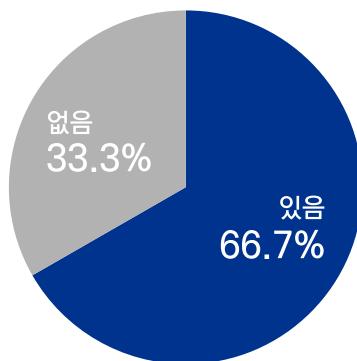
내부감사실무자 면책·감경제도

| | |
|----------|------------|
| 8.8%, 실시 | 91.2%, 미실시 |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기타 객관성 보호장치]

기타 객관성 보호장치의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능의 객관성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객관성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객관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3.3%로 조사되었다. 객관성 보호장치가 부재할 경우, 중요한 리스크를 축소 또는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체계적인 객관성 보호장치의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객관성 보호장치를 도입한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유형은 ‘객관성 보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35.7%)’였다.

객관성 관련 워크숍 또는 교육훈련

| | |
|-----------|------------|
| 35.7%, 실시 | 64.3%, 미실시 |
|-----------|------------|

순환근무제도도 내부감사실무자의 객관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순환배치 기간이 짧을 경우 내부감사실무자의 전문성을 희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객관성 손상 가능 시나리오 및 대책 정리

| | |
|-----------|------------|
| 24.0%, 실시 | 76.0%, 미실시 |
|-----------|------------|

최근 1년 이내 수행업무 감사에서 배제

| | |
|-----------|------------|
| 18.7%, 실시 | 81.3%, 미실시 |
|-----------|------------|

순환근무제도 또는 부서 내 업무 교대

| | |
|-----------|------------|
| 18.1%, 실시 | 81.9%, 미실시 |
|-----------|------------|

이해상충의 주기적 보고·서명·공개

| | |
|-----------|------------|
| 15.8%, 실시 | 84.2%, 미실시 |
|-----------|------------|

객관성 저해 가능성을 성과지표로 측정·관리

| | |
|----------|------------|
| 9.4%, 실시 | 90.6%, 미실시 |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 2.5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 ✓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보고라인 및 인사권 확보, 내부감사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인사평가 등에서의 우대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2.1, 2.2, 2.3]

- ✓ 내부감사실무자는 과거 12개월 이내에 담당하던 업무의 평가감독을 해서는 안된다.
- ✓ 앞서 자문을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 검증 서비스(assurance)를 제공해야 한다면,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앞서 제공한 자문 서비스가 객관성을 손상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고, 내부감사실무자 개인의 객관성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자가 앞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면, 자문 착수 이전에 잠재적인 객관성 손상 가능성에 있음을 자문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객관성 손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감사실무자는 객관성 손상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적절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성과평가, 보수 정책, 보너스 및 성과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객관성 손상 가능성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유관 경영일선부서, 감사(위원회) 및(또는) 최고경영진과 객관성 손상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결정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의 객관성 손상이 되었거나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객관성 손상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전문성 향상 방안

기업 외부 교육훈련 독려

| | |
|-----------|------------|
| 78.9%, 실시 | 21.1%, 미실시 |
|-----------|------------|

내부감사실무자의 역량 평가를 실시

| | |
|-----------|------------|
| 15.2%, 실시 | 84.8%, 미실시 |
|-----------|------------|

응답기업에서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외부 역량 계발 활동을 독려한다는 응답이 78.9%로 나타나 기업들은 외부 교육훈련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 전문자격증의 취득 및 유지 활동 지원

| | |
|-----------|------------|
| 35.7%, 실시 | 64.3%, 미실시 |
|-----------|------------|

On the Job Training

| | |
|-----------|------------|
| 32.2%, 실시 | 67.8%, 미실시 |
|-----------|------------|

감사메뉴얼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

| | |
|-----------|------------|
| 32.2%, 실시 | 67.8%, 미실시 |
|-----------|------------|

E-Audit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체계화

| | |
|-----------|------------|
| 29.8%, 실시 | 70.2%, 미실시 |
|-----------|------------|

이상징후 적발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 |
|-----------|------------|
| 28.7%, 실시 | 71.3%, 미실시 |
|-----------|------------|

외부전문인력 고용·협업

| | |
|-----------|------------|
| 18.1%, 실시 | 81.9%, 미실시 |
|-----------|------------|

기업 내 순환근무제도를 통한 내부감사 전문성 기여

| | |
|-----------|------------|
| 17.5%, 실시 | 82.5%, 미실시 |
|-----------|------------|

내부감사부서 내 최소 근속연한 두기

| | |
|-----------|------------|
| 15.2%, 실시 | 84.8%, 미실시 |
|-----------|------------|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 관련 서명 및 실천

| | |
|----------|------------|
| 8.2%, 실시 | 91.8%, 미실시 |
|----------|------------|

기업 내에서 감사부서와 피감사부서간의 순환근무를 도입할 경우, 경영 실무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잦은 순환근무로 인해 내부감사실무자의 전문성이 희생될 수 있고, 객관성 손상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 분야에 대한 내부감사기능 수행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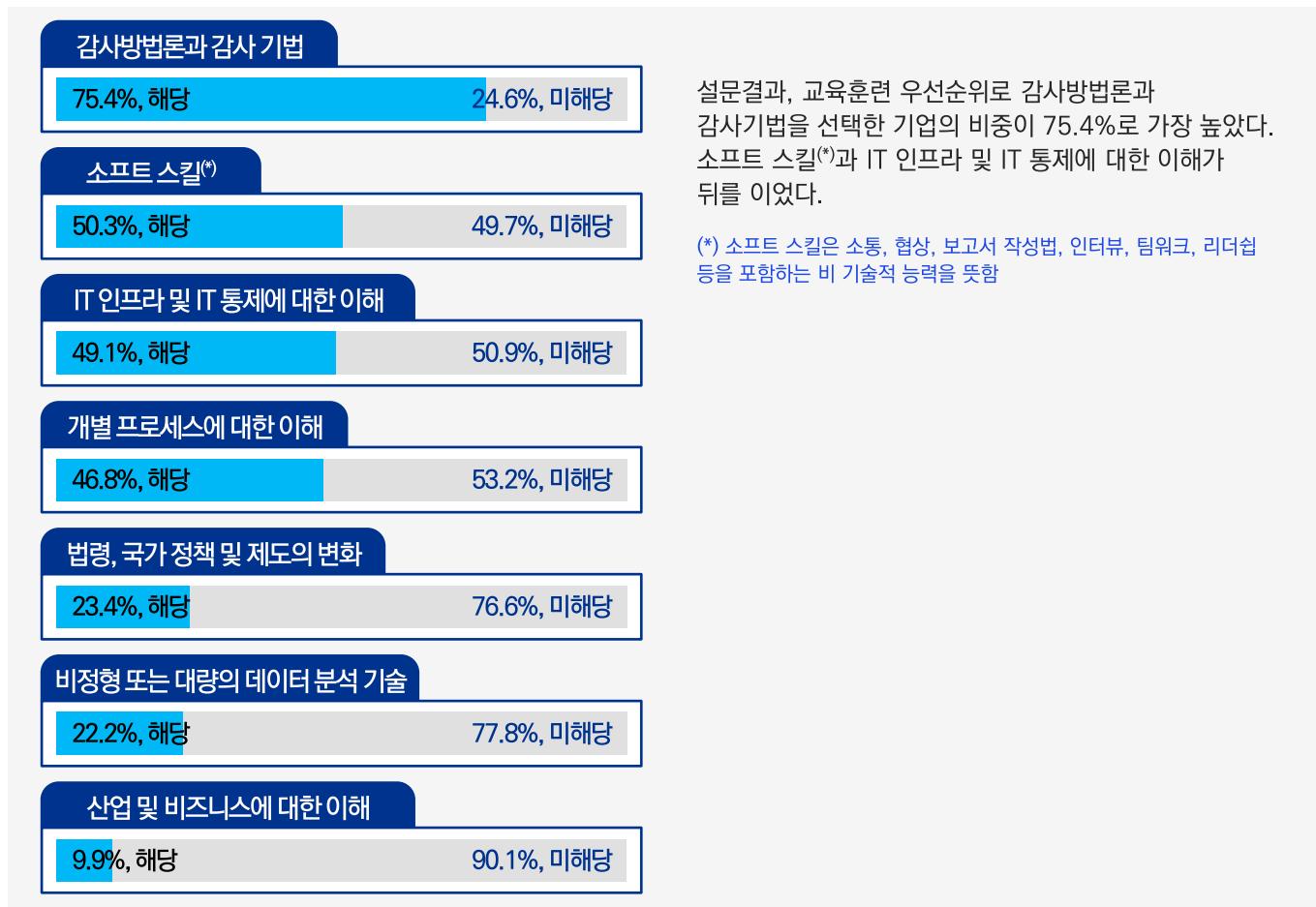
[Standard 3.2]

- ✓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서비스의 효과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유 역량을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5. 교육훈련 우선순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내부감사 역량을 분석하여, 유지·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는 과정 중인 기업의 경우, 하기의 교육훈련 우선순위 설문결과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교육훈련 우선순위]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3.1, 3.2, 10.3]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내부감사부서가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 또는 획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의 교육·훈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 내부감사실무자는 내부감사의 효과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보유 역량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총원과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 최소 연 1회 내부감사실무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분기단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IV.

감사방법론의 효율성

| | |
|--------------------------|----|
| 1. 내부감사 인력규모 | 42 |
| 2. 위험기반감사(RBA) | 44 |
| 3.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방법론의 채택 | 45 |
| 4. 2024년 중점감사영역 우선순위 비교 | 46 |
| 5.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 | 47 |
| 6. 내부감사부서에 특화된 성과평가지표 운영 | 48 |

Preview 감사방법론의 효율성이란?

- ✓ (감사방법론) 본 보고서에서 감사방법론은 감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지칭함
- ✓ (감사방법론의 효율성)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절차 및 내부 규정이 효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함
- ✓ (위험기반감사, Risk Based Audit) 위험기반감사란 감사계획 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제한된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감사계획 방법임
- ✓ (품질보증개선 프로그램, Quality Assurance and Improvement Program) 내부감사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발견하여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Source: IIA, IPPF(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2017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2024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핸드북 4th Edition, 2023.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2019.5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2018.05.15

IV. 감사방법론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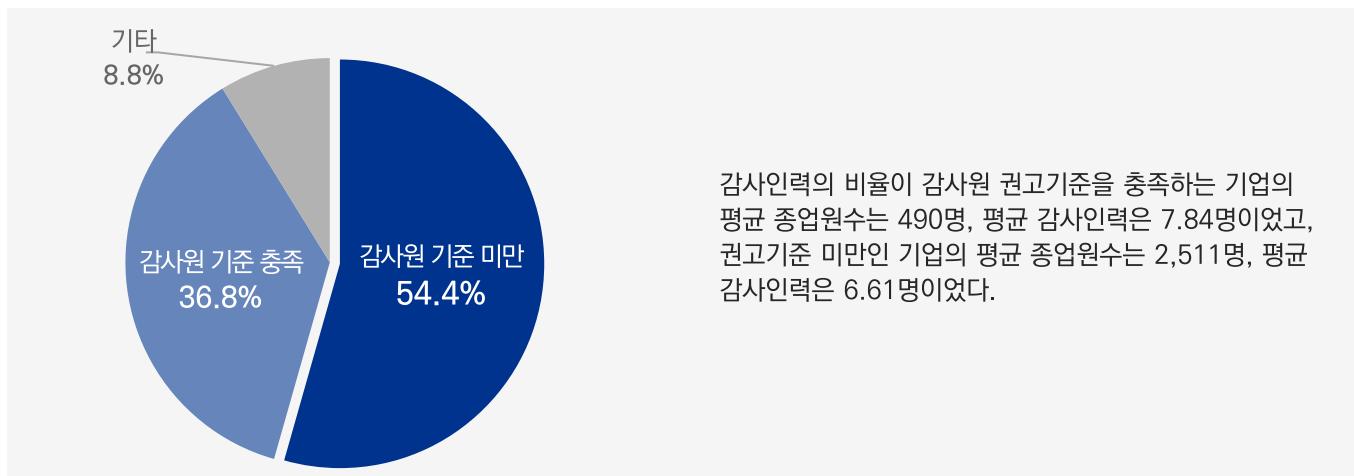
1. 내부감사 인력규모

개별 기업의 내부감사인력규모를 검토 또는 결정함에 있어, 기업유형별, 인력규모별 통계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감사원의 자체감사인력비중 산출 산식을 참고하여 기업유형별, 자산규모별, 종원규모별로 비교를 실시했으며, 비사업 지주회사의 비중 또한 계산해보았다.

- ✓ 감사원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 인력을 감사 대상 인력 대비 최소 0.8% 이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ource: 감사원, 202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 2022.12

[감사원 권고 감사인력(정규직 0.8% 이상) 비중 충족 여부]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감사원 권고 감사인력(정규직 0.8% 이상) 비중 충족 여부]

| 구분 | 평균 비중 |
|-------|-------|
| 공공기관 | 0.77% |
| 금융회사 | 0.69% |
| 상장기업 | 0.33% |
| 그 외 | 0.23% |
| 전체 평균 | 0.43%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경성규범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력 평균 비중이 연성규범의 적용을 받는 상장기업의 감사인력 평균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사원 권고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인 0.8%에 근접했다. 반면에 상장기업은 전체 평균인 0.43%보다 낮은 0.33%로 나타났다.

[총원 대비 감사인력의 평균 비중 - 자산규모별]

| 구분 | 평균 비중 |
|-------------|-------|
| 2조원 이상 | 0.39% |
| 1조원 ~ 2조원 | 0.40% |
| 5천억원 ~ 1조원 | 0.46% |
| 1천억원 ~ 5천억원 | 0.46% |
| 1천억원 미만 | 0.31%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자산규모와 내부감사인력의 비율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모든 구간에서 감사원의 권장 기준인 0.8%를 크게 하회했으며, 자산 규모 1천억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감사인력의 평균 비중은 감소하였다.

[총원 대비 감사인력의 평균 비중 - 총 임직원 규모별] (단위: 명)

| 구분 | 평균 비중 |
|-----------|-------|
| ~50 | 7.26% |
| 51~100 | 3.43% |
| 101~500 | 1.14% |
| 501~1000 | 0.62% |
| 1001~5000 | 0.43% |
| 5001~ | 0.20% |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기업의 총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감사인력의 평균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원 대비 감사인력의 평균 비중 - 지주회사 유형별]

| 구분 | 평균 비중 |
|------|-------|
| 순수지주 | 8.49% |
| 사업지주 | 1.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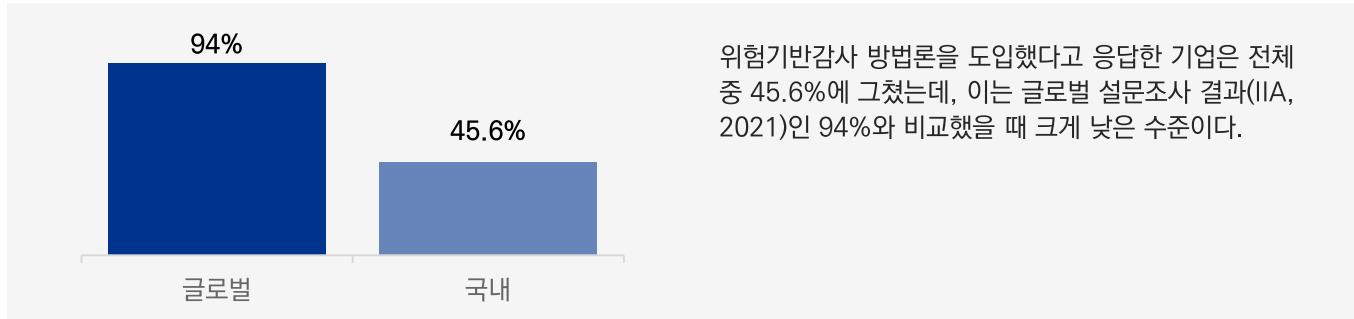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지주회사들의 감사인력의 평균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순수지주의 평균 비중은 사업지주의 평균 비중을 크게 상회했다.

2. 위험기반감사(RBA)

기업은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Risk)을 식별하고, 기업의 위험성향(Risk Appetite)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감사 자원을 분배하는 위험기반감사(Risk Based Audit)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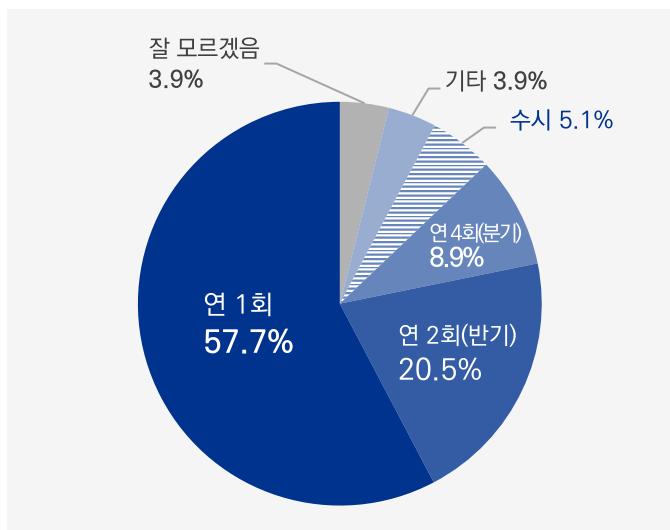
[위험기반감사(RBA)의 실시율]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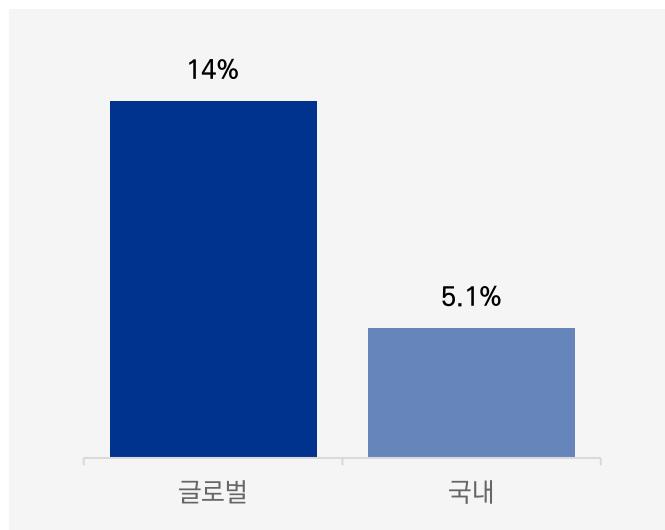
위험기반감사 운영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내부·외부 감사환경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위험에 대응·적응하는 속도와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위험평가 실시 빈도]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수시 위험평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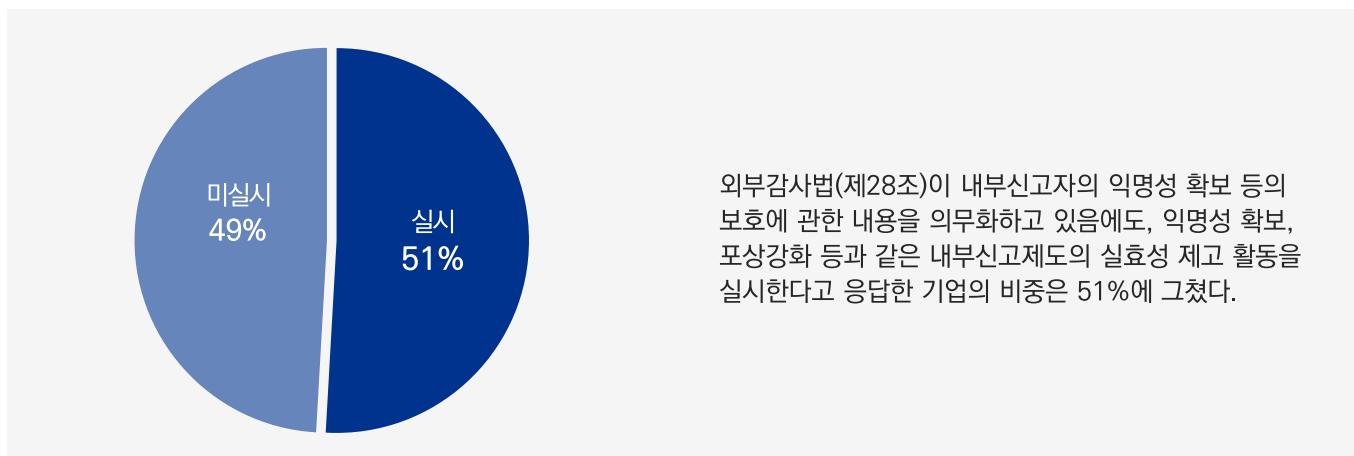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9.4]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조직의 전략, 목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방법론의 채택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익명성 확보, 포상강화 등)]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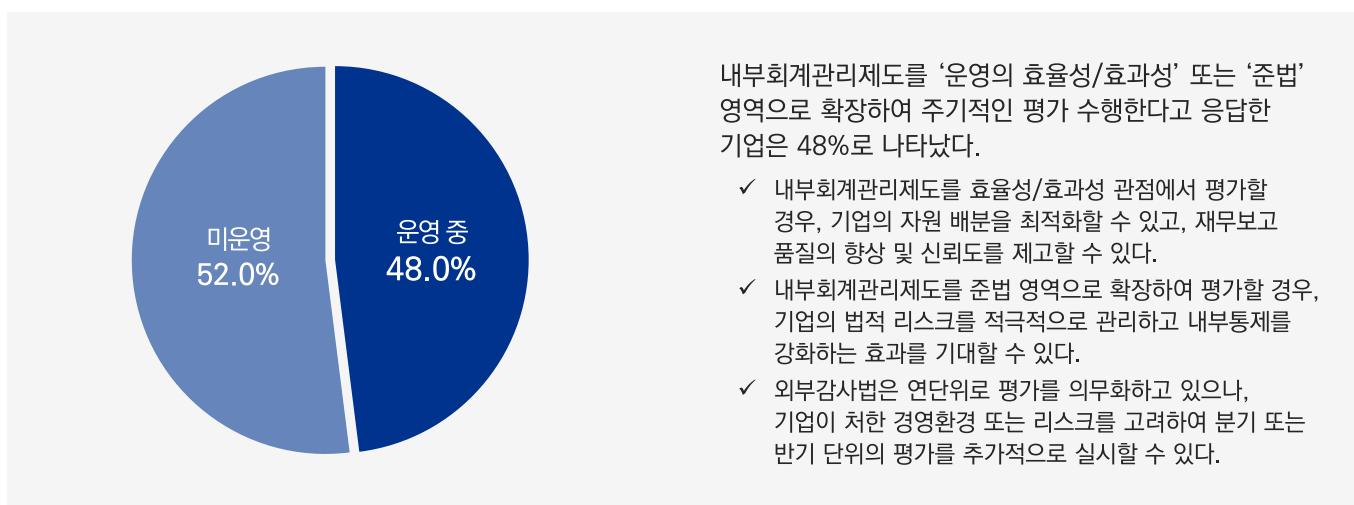
외부감사법(제28조)이 내부신고자의 익명성 확보 등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익명성 확보, 포상강화 등과 같은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활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51%에 그쳤다.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

1.6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 ✓ 감사(위원회)는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합리적 보상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사후처리를 수행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또는 ‘준법’ 영역으로 확장하여 주기적인 평가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또는 ‘준법’ 영역으로 확장하여 주기적인 평가 수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로 나타났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율성/효과성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기업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고, 재무보고 품질의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법 영역으로 확장하여 평가할 경우,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외부감사법은 연단위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 또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4. 2024년 중점감사영역 우선순위 비교

[중점감사영역의 국제 비교]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국내, 21.4%

북미, 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국내, 20.1%

북미, 15%

부정적발 및 조사

국내, 15.6%

북미, 5%

준법(컴플라이언스)

국내, 15.3%

북미, 15%

재무영역(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 영역)

국내, 10.2%

북미, 7%

비용 절감

국내, 6.1%

북미, 4%

ESG 전략 및 공시

국내, 4.1%

북미, 2%

IT 기술

국내, 2.5%

북미, 9%

거버넌스와 문화

국내, 2.3%

북미, 3%

사이버보안

국내, 1.6%

북미, 10%

공급망 등 제3자 관계

국내, 0.9%

북미, 4%

외부감사 지원

국내, 0.0%

북미, 4%

북미 설문조사 결과(IIA, 2023)와 비교했을 때, 사이버보안(10%), IT 기술(9%), 외부감사 지원(4%), 공급망 등 제3자 관계(4%)의 항목에서 북미 기업들보다 국내 기업들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사이버보안의 경우, 2024년 글로벌 조사(IIA, 2024)에서 응답기업 중 약 73%가 사이버보안을 중요한 리스크 사안으로 꼽았다.
- ② IT 기반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중이 낮았던 국내와 달리, 북미 기업들은 IT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다.
- ③ 국제감사기준(ISA 610)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 내부감사부서가 외부감사팀과 한 팀을 구성하여 외부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동 기준을 도입하지 않았다. 내부감사부서가 외부감사팀과 한 팀으로 외부감사를 지원할 경우, 내부감사실무자와 외부감사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주요 외부감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내부감사에 대한 이해력과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외부감사 비용의 절감까지도 가능하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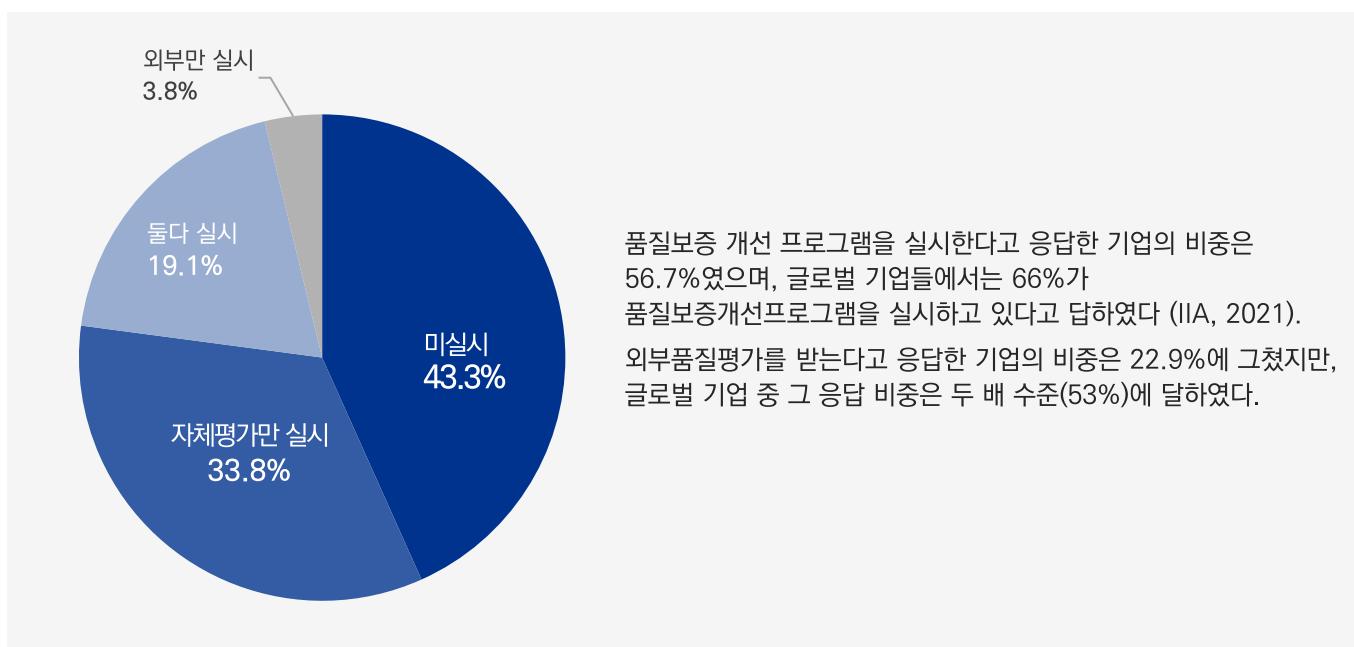
5.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에 따르면, 내부감사실무책임자(Chief Audit Executive)가 내부감사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 (Quality Assurance and Improvement Program)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한다.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8.3)

내부감사부서는 매출·수익 창출 활동을 담당하거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 산하의 부서들과 같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내부감사부서는 성과관리 일환으로 독립적인 확신 제공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품질평가결과는 내부감사부서의 자원부족이나 독립성 및 객관성 손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고,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다.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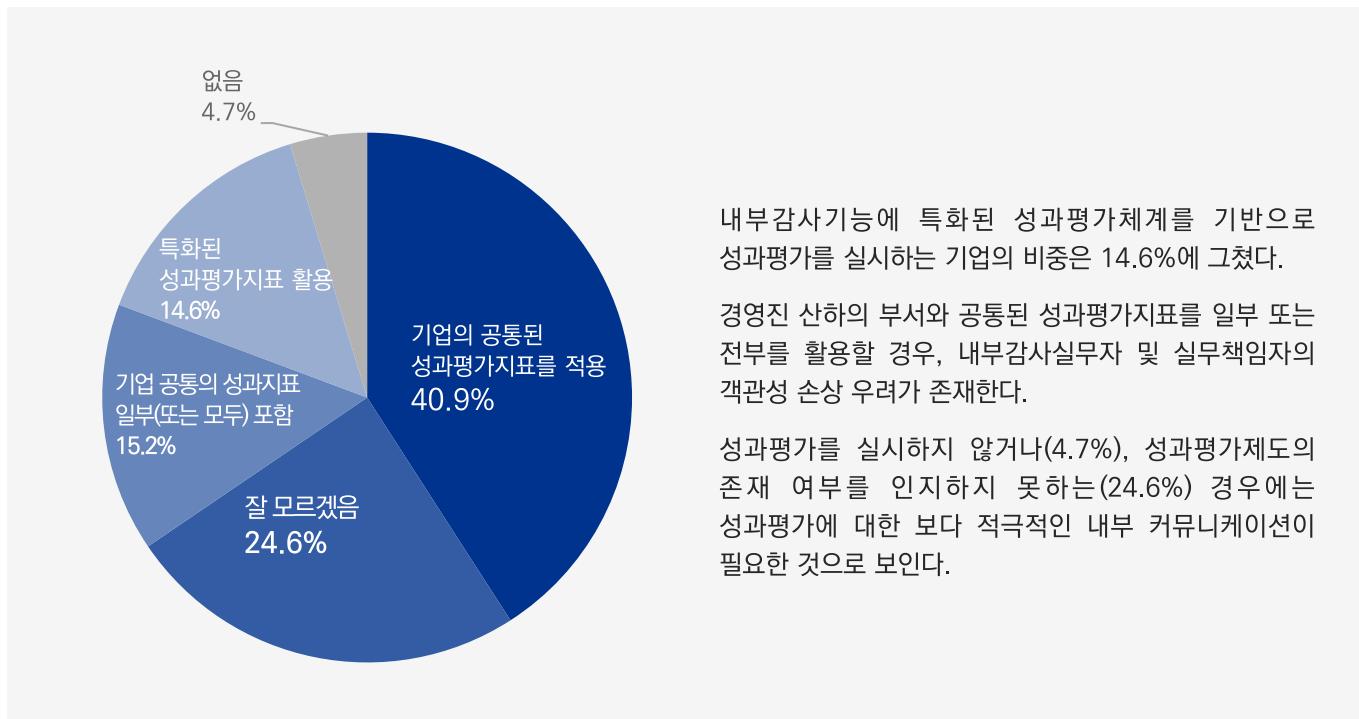
[Standard 8.3, 8.4]

- ✓ 내부감사실무 책임자는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 ✓ 내부감사실무책임자는 최소 연 1회 내부감사 평가결과를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 ✓ 감사위원회는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에 관해 내부감사실무자와 논의해야 한다.
- ✓ 외부품질평가는 최소 5년마다 1회씩 실시되어야 한다.

6. 내부감사부서에 특화된 성과평가지표 운영

내부감사부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감사기능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성과평가지표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개선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평가지표의 유형별 기준]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Standard 12.1]

- ✓ 주기적으로 내부감사 방법론의 적절성, 조직 목표 달성을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기여도, 내부감사의 품질,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및 성과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성과평가지표의 활용]

내부감사계획의 실행 완수(%)

46.2%

비용절감(%)

11.1%

감사 지적 및 권고사항 제시(건)

38.6%

내부감사 내·외부 품질평가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4%

감사 후 권고사항의 적시 이행(%)

24.6%

기업의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등)

9.4%

감사활동 또는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효율 개선(%)

19.9%

피감부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

9.4%

모범사례 발굴(건)

17.0%

지적사항의 개발(%)

8.8%

내부감사실무자가 보유한 감사 관련 기술, 자격증 등

12.9%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를 운영하지 않음

22.2%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성과평가지표는 내부감사계획의 실행 완수율(46.2%), 감사 지적 및 권고사항 제시 건수(38.6%), 감사 후 권고사항의 적시이행 (2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① 한편 응답기업 중 9.4%는 소속기업의 재무성과지표를 내부감사부서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었다. 내부감사부서의 존립목적은 독립적인 경영활동 감독에 있으며, 수익창출의 (자원)역할을 수행하는 경영 1선 또는 2선부서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내부감사부서의 성과평가지표에 기업의 재무성과지표를 포함시킬 경우 객관성의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무지표를 내부감사부서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내부감사부서의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지표를 구성할 때, 상기 성과평가지표와 함께 다음 페이지에 정리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영역 평가지표들도 참고가 가능하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참고] 감사원 –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 기준**[자체감사활동 영역(3개 분야, 15개 심사지표 50점)]**

| 심사분야 | 심사지표(괄호안은 정성평가 배점) | 배점 |
|------|-------------------------|----|
| | 감사인의 경력 | 4 |
| |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1.5) | 3 |
| | 일상감사 이행노력도(1) | 3 |
|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1) | 1 |
| | 감사 연인원 | 2 |
| 감사활동 |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5) | 5 |
| | 본부·본청 감사실시 정도(2) | 2 |
| |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4) | 6 |
|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2) | 2 |
| | 감사지원 공유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용(2) | 3 |
| | 감사활동분야 종합평가(2) | 2 |
| 감사성과 | 재무·신분·제도개선 등 감사성과(6) | 12 |
| |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 2 |
| 사후관리 |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 2 |
| | 감사결과 공개 정도 | 1 |

Source: 감사원, 2023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 2022.12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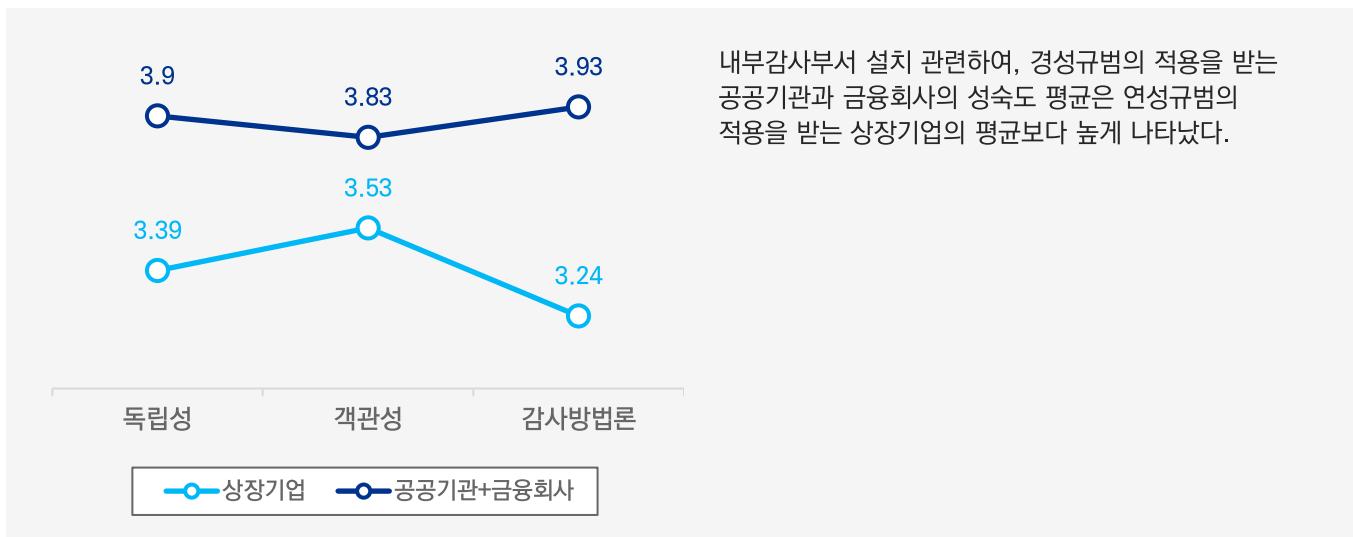
내부감사기능의 성숙도와 만족도 평가

| | |
|--------------------|----|
| 1. 성숙도 | 52 |
| 2. 만족도 | 53 |
| 3. 모범사례의 만족도 비교 분석 | 55 |

1. 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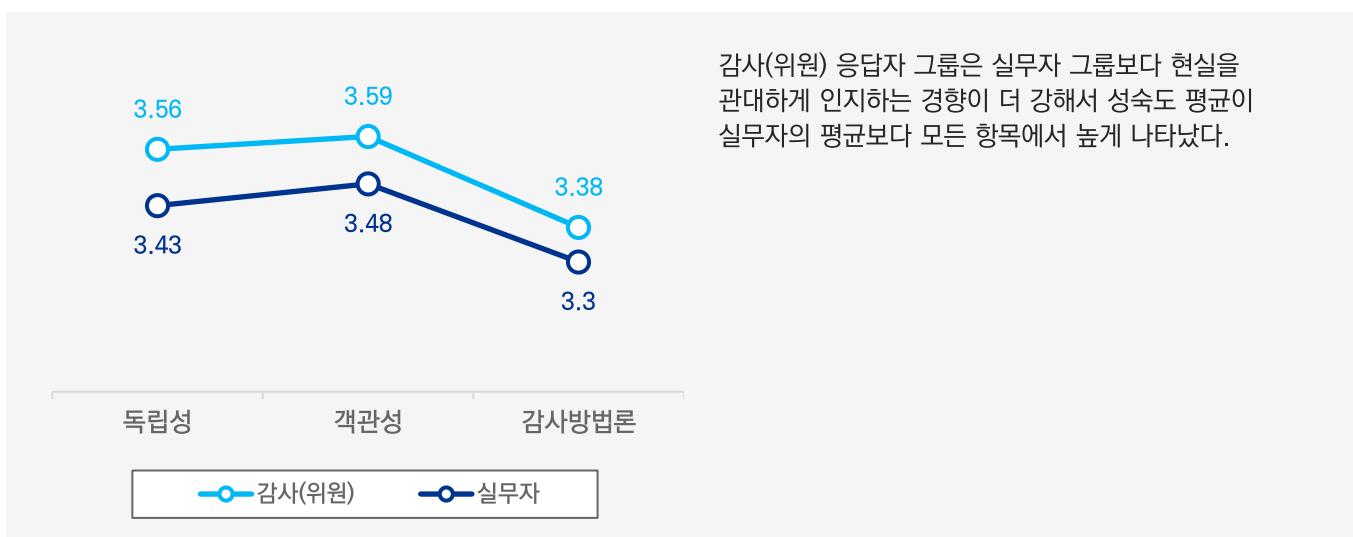
성숙도 분석은 내부감사기능의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성숙도 항목을 독립성, 객관성, 감사방법론 3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항목별 인지 수준을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 유형별 성숙도 응답 차이]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응답자 그룹별 성숙도 응답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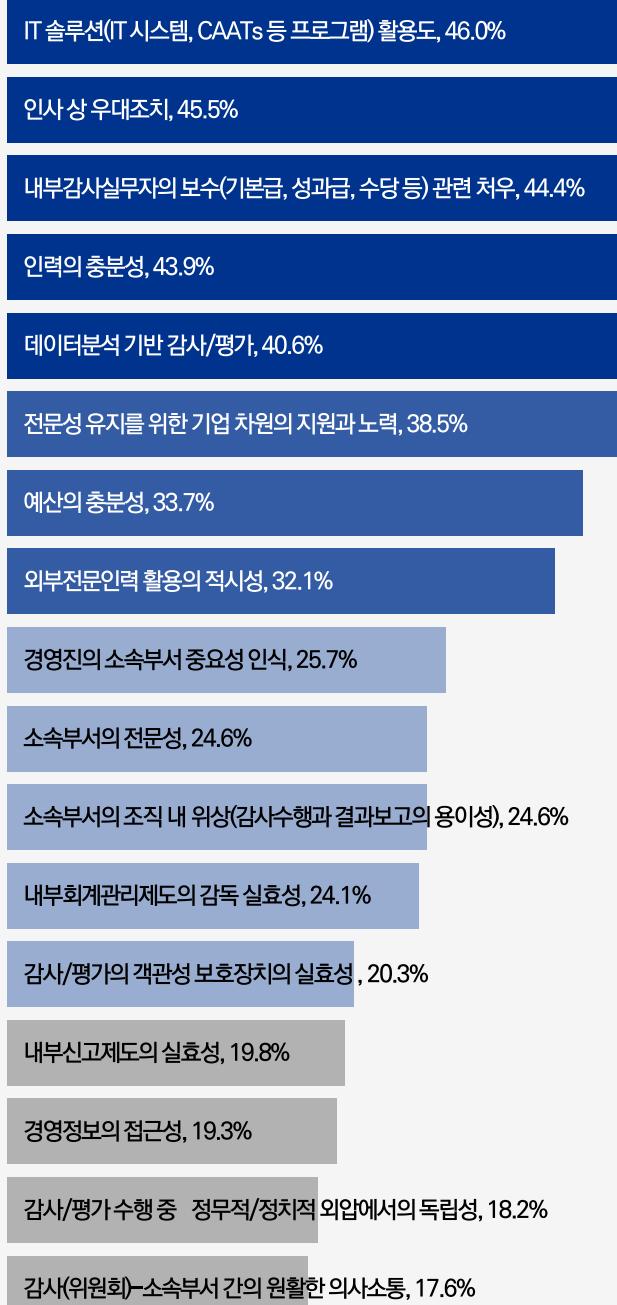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2. 만족도

(1) 만족도 항목별 불만족 응답 비중

[불만족 응답 비중]



IT 솔루션 활용도(46.0%)나 데이터 분석 기반 감사·평가(40.6%)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설문결과에서 IT감사 실시 비중이 낮고, IT 관련 전문인력 보유비중 또한 낮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 내부감사환경에 대한 불만족 응답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인력의 충분성(43.9%), 예산의 충분성(33.7%)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감사기능의 수행 시 인력, 예산 등으로 인해 내부감사를 중단했거나 내부감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관행으로 인한 내부감사품질의 저하 문제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감사실무책임자가 요구하는 예산, 인력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합리적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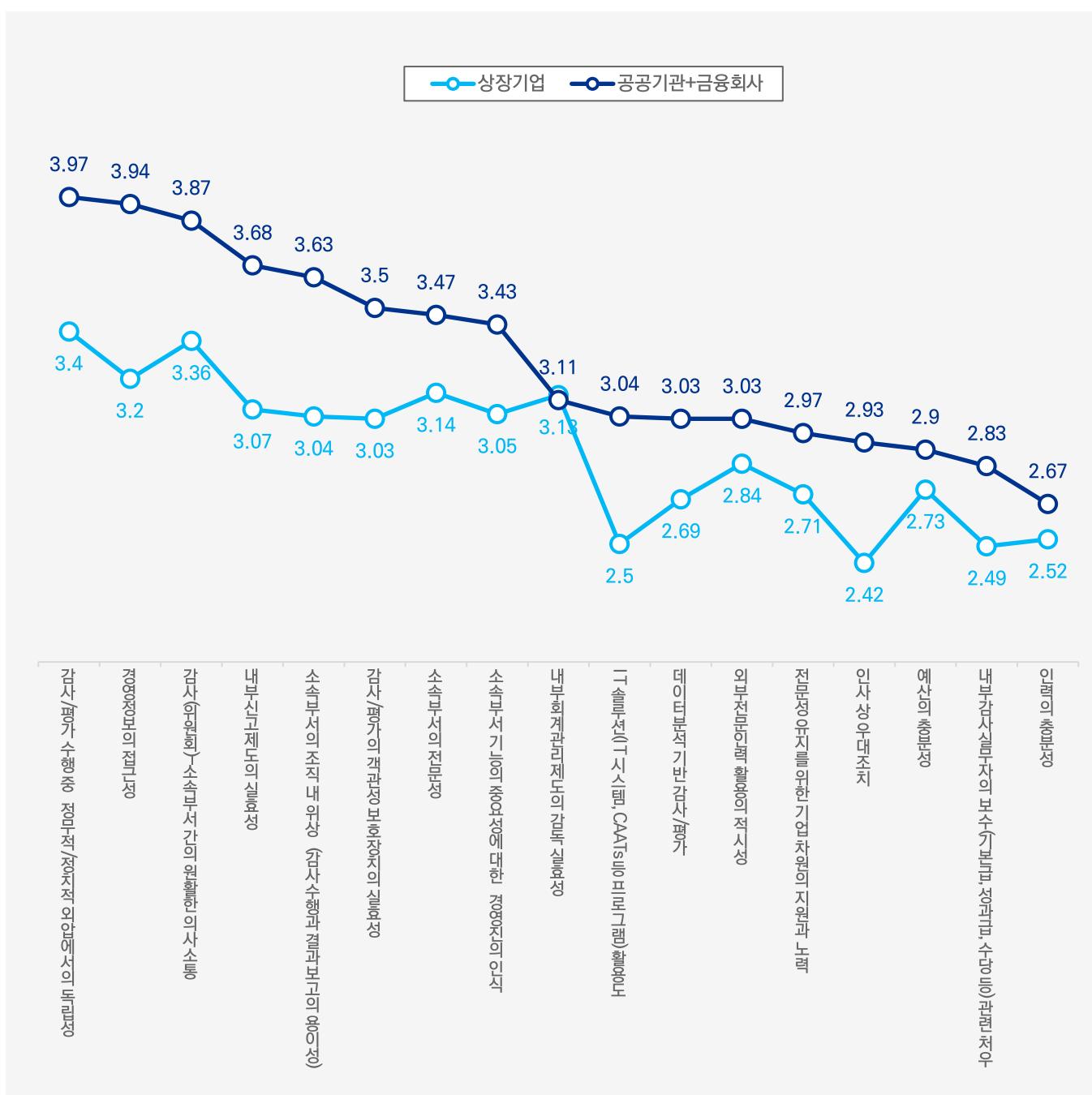
한편, 독립성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앞선 설문결과에서 독립성 손상이 의심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내부감사실무자, 내부감사실무책임자, 감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문제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2) 적용규범의 성격에 따른 만족도 결과 비교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하여 경성규범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대다수의 항목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경성규범을 적용 받지 않는 상장기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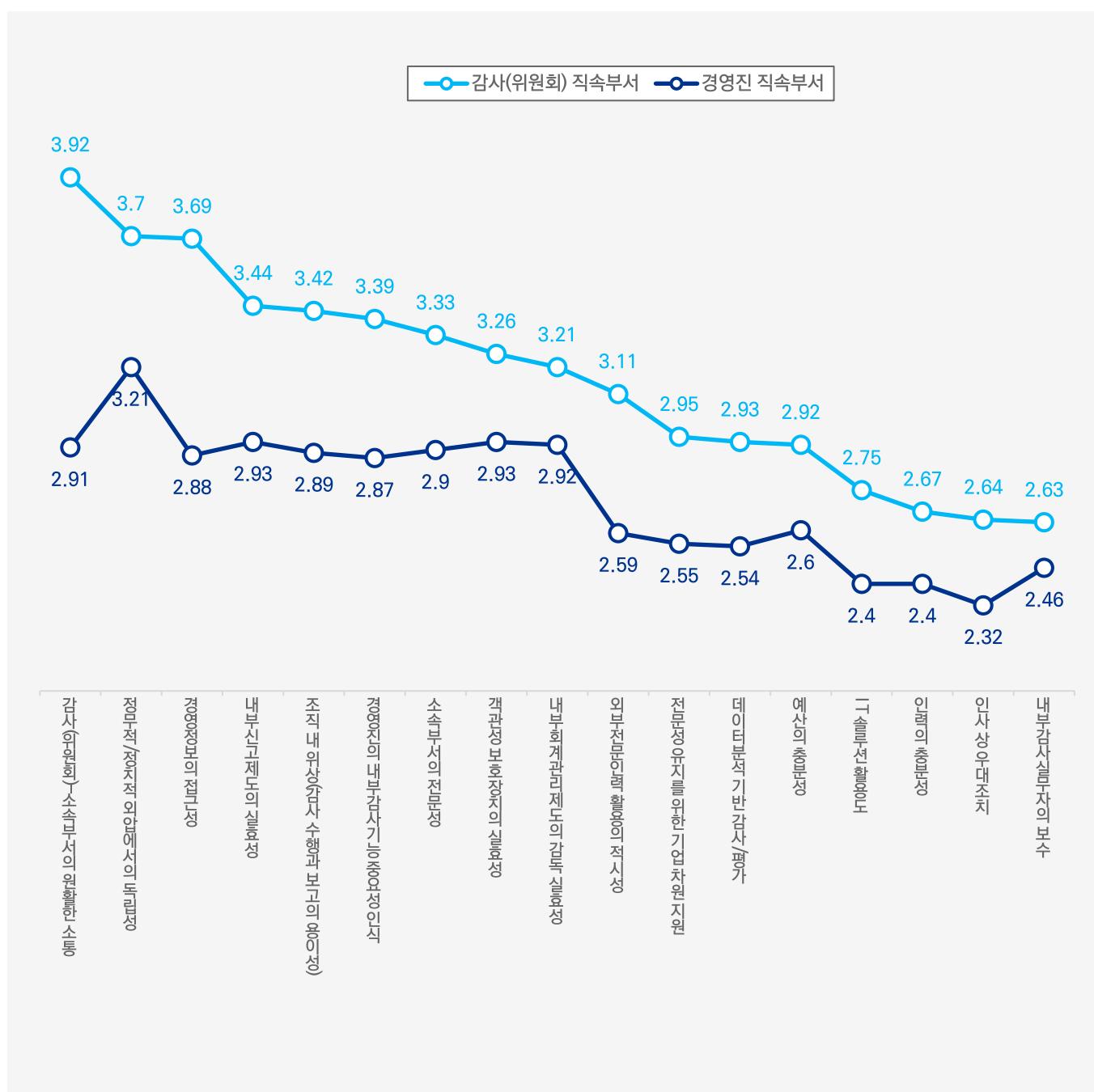
[공공기관+금융회사와 상장기업의 만족도 평균 비교]



3. 모범사례의 만족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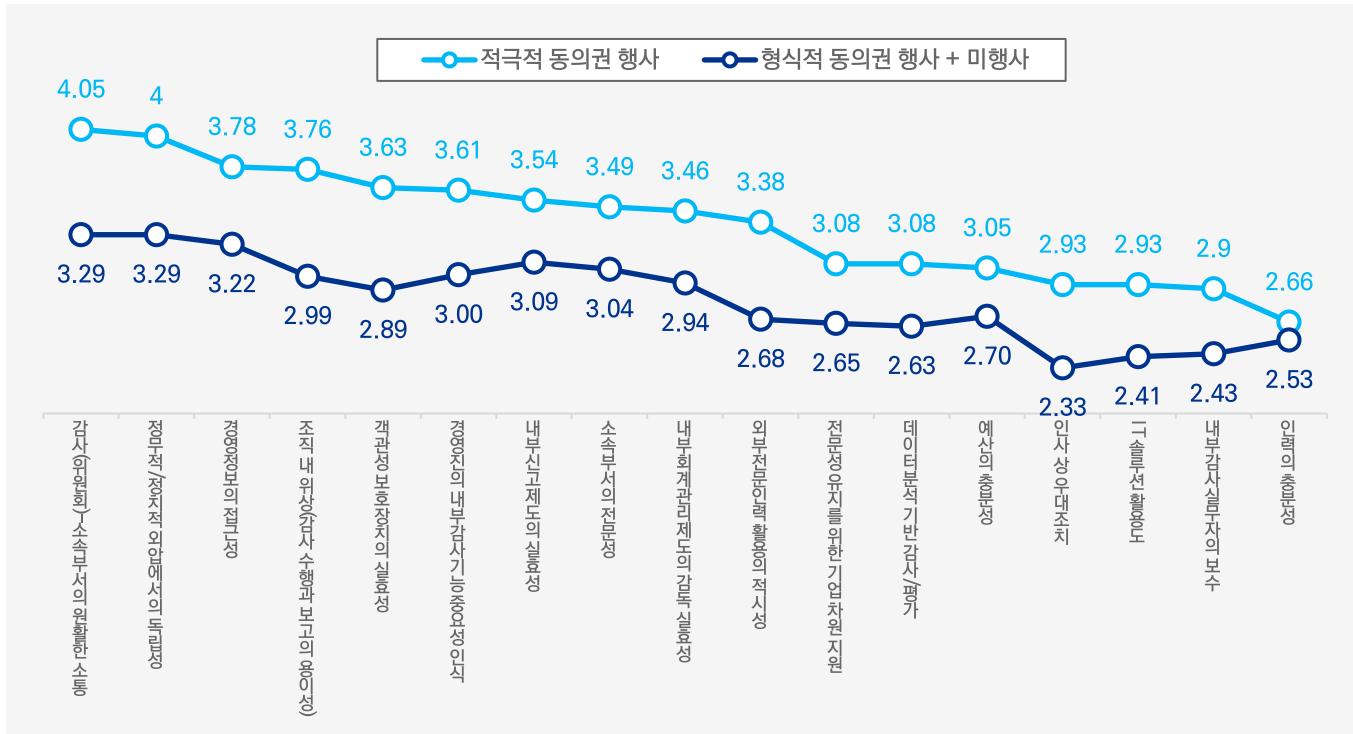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에 관한 답변 결과에 따라 만족도 평균 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독립성 관련하여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기업의 응답자 그룹 만족도 평균이 모든 항목에 걸쳐서 모범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응답자 그룹 만족도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직속부서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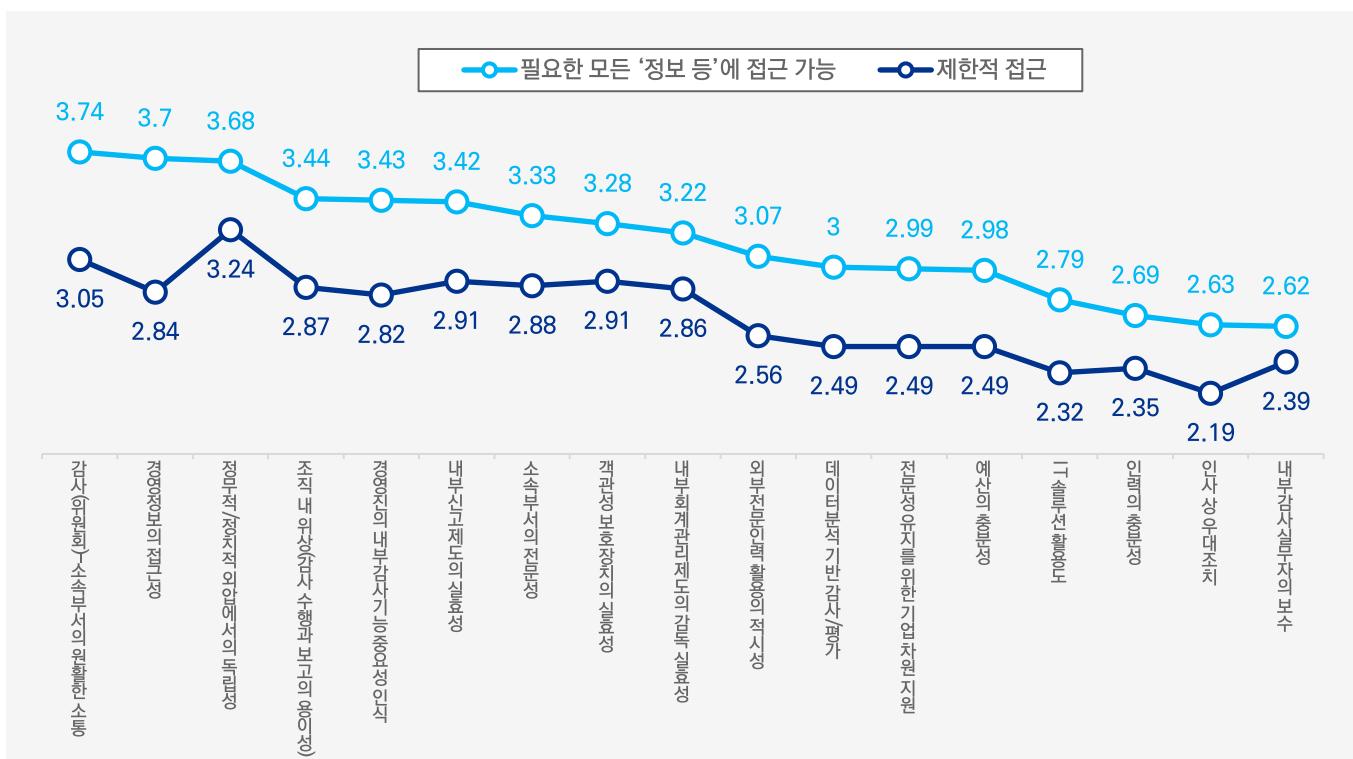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임면동의권의 행사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정보의 접근성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VI.

맺음말

VI. 맺음말

앞서 살펴본 설문분석결과에서 다수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관상으로도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의 직속부서로 편성된 비율이 49.1%에 달하였으며, 제3차 방어선 모델처럼 이중적 보고체계가 확립된 기업의 비중은 8.2%뿐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도 평가 부서는 운영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편제되어야 함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부서가 운영책임자인 최고경영진 산하의 부서로 편제되는 경우가 31.6%에 달하였다.

독립성과 함께 내부감사기능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객관성에 관한 설문결과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감사기능 전문자격증인 CPA와 CIA 소지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각각 78.9%, 69.0%에 달하였다. IT 기반 감사의 실시 비중은 34.5%에 그쳤으며, IT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시스템 전문가 등의 보유 비중 또한 낮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IT 기반 감사의 전문성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성 보호장치나 인사우대 장치가 부재한 기업의 비중이 각각 33.3%, 50.3%로 높게 나타났다.

감사방법론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험기반감사,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내부감사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 등의 감사방법론 운영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험기반감사의 실시 비중과 실시 빈도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고, 외부감사법이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9.1%에 달했다. 내부감사 품질보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이 43.3%였고, 외부품질평가를 받지 않는 기업의 비중이 77.1%로 높게 나타났다.

내부감사기능의 본질을 구성하는 독립성과 객관성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이 결여된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은 신뢰도나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감사실무자 및 책임자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내부감사결과의 객관성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감사방법론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내부감사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독립성 관련 모범사례를 실시하는 기업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만족도를 거의 모든 측정 항목에서 상회하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관한 강성규범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만족도 결과에서 상장기업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별첨) 내부감사기능 서베이 대상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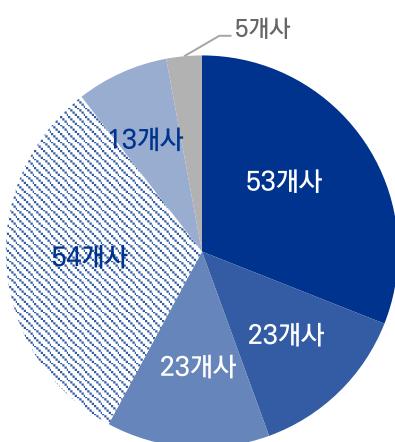
1) 설문 기간

- 삼정KPMG와 한국감사협회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내기업의 감사(위원)과 내부감사실무자를 대상으로 6주간 서베이를 실시하였음

2) 전체 서베이 대상 기업 수 및 자산규모·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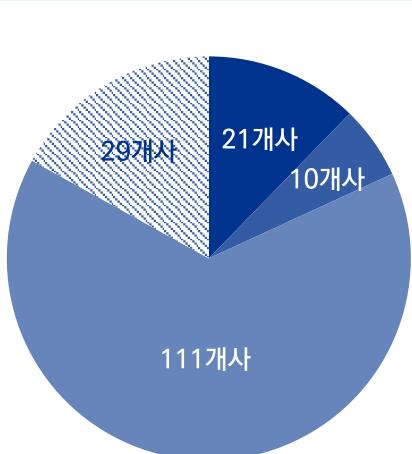
- 서베이 기업은 총 171개사이며 자산규모·유형별 분포는 하기와 같음

[분석 대상 회사 자산 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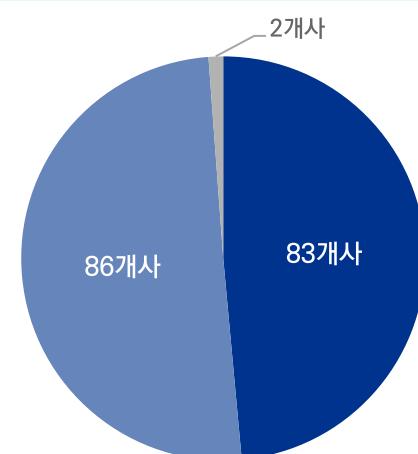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ACI

[분석 대상 회사 유형별 현황]



Source: 삼정KPMG ACI

[분석 대상 회사 감사기구 유형별 현황]



Source: 삼정KPMG ACI

참고문헌

- 감사원, 202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 2022.12
-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핸드북 4th Edition, 2023.6
- 삼정KPMG ACI, 2023 Audit Committee Outlook, 2023.8
- 한국거래소, '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점검 및 분석 결과 발표, 2023.12.7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3호: 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2023.12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2019.5
-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2018.05.15
- CCBA, Ethics Survey, 2021
- IIA, IPPF—Practice Guid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2011.8
- IIA, IPPF(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2017
- IIA,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2024
- IIA, North American Pulse, 2023
- IIA, 2021 AIS Benchmarking Report, 2021

Business Contacts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변영훈 감사부문 대표

E. ybyun@kr.kpmg.com

김민규 부대표 (ACI 리더)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 (ACI 부리더)

E. jshim@kr.kpmg.com

이민형 이사

E. minhyunglee@kr.kpmg.com

노유경 책임연구원

E. youkyunglo@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E. kyeongseokmin@kr.kpmg.com

김다슬 선임연구원

E. daseulkim@kr.kpmg.com

박수진 연구위원

E. spark153@kr.kpmg.com

ACI Committee

오헌창 부대표

E. heonchangoh@kr.kpmg.com

강인혜 전무

E. ikang@kr.kpmg.com

김성배 전무

E. sungbaekim@kr.kpmg.com

김유경 전무

E. youkyoungkim@kr.kpmg.com

김시우 상무

E. siwookim@kr.kpmg.com

최재혁 상무

E. jaehurkchoi@kr.kpmg.com

한정우 상무

E. jungwoohan@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